

조세정책 토론회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2015. 12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조세정책 토론회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결과보고서

2015. 12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일시: 2015. 10. 30.(금) 09:30~11: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개회사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발제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사회 김동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토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토론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



토론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토론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Contents

Ⅰ 개 회 사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3
Ⅰ 축 사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	7
Ⅰ 발 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15년 세법개정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11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25
Ⅰ 토 론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41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43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	45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51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67
Ⅰ 회 의 록			87
Ⅰ 언론보도 모음			125



개회사

개회사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비록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으나 서면으로나마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신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토론을 맡아주신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님,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김동건 교수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성명재 교수님, 김유찬 교수님, 김우철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 의원님, 보좌진, 학계, 관련기관 공무원 및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저성장의 추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부문에서는 복지 등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세수여건의 악화로 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매년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출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제 및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15년도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이 대내외 경제환경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논의하고, 개정내용의 타당성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원님과 여러 조세정책 분야 전문가들의 해안을 모으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곳에 함께 자리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처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나라살림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준 기

축 사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희수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2015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한 이번 조세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정의화 국회의장님, 사회를 맡아주신 김동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기간 지속된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인해 저성장 추세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과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환경 악화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소비 심리를 개선시키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와 투자의 증가, 고용 증대가 필수적인 현 상황에서, 경기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 및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과 같은 지원책이 마련되어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경기회복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세제개편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이번 토론회를 포함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기적인 경기회복뿐 아니라 경제의 저성장세와 복지지출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세입확충 및 과세 형평성 제고와 비과세·감면 정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의 경제 여건과 중장기적인 조세개편 방향에 비추어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세법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내에서도 오늘 이루어진 논의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과 여러 전문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토론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정 희 수
국회의원

발 제

조 세 정 책 토 론 회

발제 1

2015년 세법개정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목 차

I

2015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II

참고(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1.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1.1. '15년 세법개정 여건

경제여건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세

-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충격 등으로 소비가 급감 → 5분기 연속 0%대 성장
-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 등 → 향후 3~4년간 청년고용절벽 현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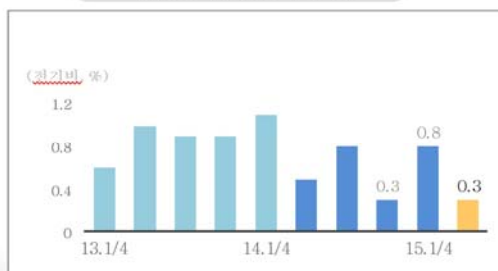
재정여건

최근 3년간 세수실적은 예산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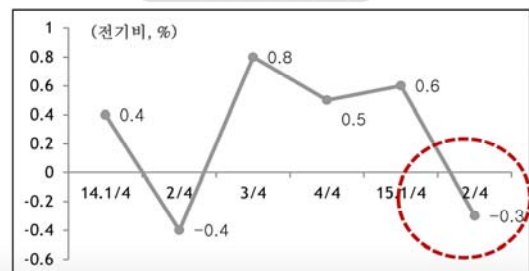
- 예산/실적(조원) : ('12) 205.8 / 203.0 ('13) 210.4 / 201.9 ('14) 216.5 / 205.5

➡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

분기별 성장률 추이



민간소비 추이



1.2. '15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비전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기본방향

경제활력 강화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조세제도화
합리화

추진전략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소비여건 개선
• 수출투자 활성화
•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 재산형성 주거안정 지원
• 중소 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 자영업자 농어민 지원 등

• 과세형평성 제고
• 비과세 감면제도 합리화
• 세원 투명성 제고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1.3.1. 경제활력 강화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모든 기업(유형주점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적용기한: 15년부터 적용



- 청년 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 ×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한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우대: 청년 임금증가액에 1.5배 가중치 부여

* A 타입: [당기소득 × 80%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10%

B 타입: [당기소득 × 30%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10%

- 임금증가액 = 청년상시근로자 근로소득 증가액 × 150% + 그 외 근로자 근로소득 증가액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율 인상: 50% -> 70%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30억원 -> 50억원

1.3.1. 경제활력 강화

▶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고, 관광문화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문화접대비 한도 상향 : 일반접대비한도의 10% → 20%

- 체크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 : 30% → 50%



*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 녹용, 로열젤리(7%), 방향용 화장품(7%),

* 일정 소비전력 이상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수상기대용량 가전제품(5%)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기준가격* 상향 : 200만원 → 500만원

*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용단, 보석, 귀금속은 기준가격 초과금액의 20% 개별소비세 부과

- 외국인 관광객 소액물품 사전면세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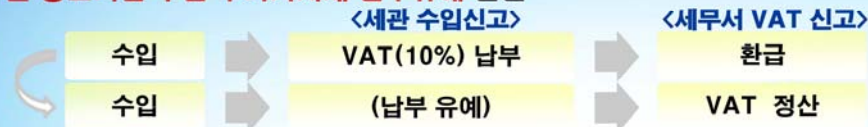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16.4.1.~'17.3.31. 적용)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1.3.1. 경제활력 강화

▶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수출 중소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펀드 도입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20~30%) 일몰연장('18년말)

* (신성장동력) LED 등 11개분야 65개 기술, (원천기술) 반도체 등 18개 분야 51개 기술

-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연장('18년말)

* 소득세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부분복귀시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 100% 면제(부분복귀시 50%)

- 개인이 특허권 등 벤처기업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신설

* '현물출자시 기타소득 과세' or '현물출자 취득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 허용

1.3.1. 경제활력 강화

▶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자발적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① 기업간 주식교환시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②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 처분시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③ 모회사가 자회사 채무 인수변제시	→	모회사 : 채무인수변제액 손금산입 자회사 : 채무면제액 과세이연 자회사 주주 : 증여세 비과세
④ 자산양도하여 금융채무 상환자금 충당시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⑤ 주주가 자산 무상 증여시	→	수증법인 : 자산수증액 과세이연 주주 : 증여재산가액 손금산입
⑥ 금융기관이 채무면제시	→	면제법인 : 채무면제액 과세이연 금융기관 :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각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연장('18년말)

① 재무구조 개선시 자산수증, 채무면제, 자산양도 이익 과세이연 ②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설립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③ 조선, 건설 등 5개 특정업종간 합병후 중복자산 처분시 과세이연 등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9

1.3.2. 민생안정

▶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현행	개정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일반임대	5년이상 임대 : 20%	4년 30%
- 준공공임대 및 기업형임대	8년이상 임대 : 50%	8년 75%
<장기보유특별공제>		
- 일반임대		
* 매입임대	최대 40%(10년 보유시)	최대 40%(10년 보유시)
* 건설임대	최대 30%(10년 보유시)	최대 40% (10년 보유시)
- 준공공임대 및 기업형임대	8년 50%, 10년 60%	8년 50%, 10년 70%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10

1.3.2. 민생안정

중소 벤처기업 근로자의 일자리를 안정시키겠습니다.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10%(대기업 5%)
-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일몰연장: 1인당 200만원('16년말까지)



-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 지정기부금단체 포함
 - 동 기금 출연금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에 추가
-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설
 - * 핵심인력과 해당 중소기업이 동 기금에 매달 적립금을 각각 납입 → 5년 이상 재직 후 핵심인력이 수령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연장('18년말)
-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제지원 일몰연장('18년말)

1.3.3. 공평 과세

공평하게 세금을 과세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 대주주 기준 지분율/시가총액 : (코스피시장) 2%/50억원 → 1%/25억원 (코스닥시장) 4%/40억원 → 2%/20억원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단일화 : 중소기업 대주주 10% → 20%

1.3.3. 공평 과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 : 대/중견/중소기업 3%/5%/10% → **1%/3%/6%**
 - 생산성향상시설 : 대/중견/중소기업 3%/5%/7% → **1%/3%/6%**
- **사행산업 당첨금 과세기준 강화** : 경마 등 배팅액 100배 초과 → **100배 또는 200만원 초과**
- **조합출자금 과세특례 합리화**: 배당소득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16년 5%, '17년~ 9%)**
- **기타 조세감면제도 합리화**
 - 전자세금계산서 VAT 세액공제 : 일몰종료
 -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 일몰종료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 일몰종료
 -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재설계*

* (비우량채권비율) 30% -> 40%, (투자한도) 5천만원 -> 3천만원



13

1.3.3. 공평 과세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 철스크랩 추가**
 - * 금지금('08년) → 고금('09년) → 구리스크랩('14년) → 금스크랩('15년)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 발급 → 미발급시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 **고액 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 채납국세 5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다국적기업이 제출하는 국제거래정보의 범위 확대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추가 제출**

〈보고서 1(마스터 파일)〉	〈보고서 2(로컬 파일)〉
- 다국적기업의 전체 법적 소유구조 및 자회사 지리적 위치	- 현지법인 사업전략 상세 설명
- 그룹매출 5%에 달하는 상위 5개 재화 서비스 상세내역	- 주요특수관계 설명 및 거래발생 현황
- 중요사업구조 재편거래, 지분취득, 기업매각 등에 관한 설명	- 거래유형별 기업 리스트 및 각 기업별 관계 표시
- **국내 파견된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부여**
 - (원천징수) 사용내국법인이 용역대가의 **17% 원천징수**
 -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또는 환급신청



14

1.3.4.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허용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제1기)>



- 상속 증여 재산평가 절차 개선
 - 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 → 1개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 인정
 - 납세자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요청 가능
- 물납제도 개선
 - 세목 축소 :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제외하고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로 한정
 - 금전납부 판단기준 추가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할 것

1.3.4. 조세제도 합리화

세부담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 당해연도 소득의 80%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 적용범위 명확화, 개별 예시규정 과세요건 정비
-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 과세
 - 증여이익 : 수혜법인 3년간 영업이익* × 지배주주의 지분을
 *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증여세 재계산



1.4. 세수효과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10,892억원

- (증가 요인)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고소득자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등
- (감소 요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등

(단위 : 억원)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이후
계	10,892	5,561	8,353	△35	△1,547	△1,440
소득세	3,786	2,386	1,211	1,904	△805	△910
법인세	2,398	357	5,292	△1,979	△742	△530
부가가치세	3,135	1,227	1,868	40		
기타	1,573	1,591	△18	0	0	0

세부담 귀착

서민·중산층/중소기업	고소득자/대기업	기타	계
△1,525	10,529	1,888	10,892

2. 참고(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2.1.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

경제성장

투자부진 등에 따라 '90년대 이후 성장을 둔화

* 실질성장률(%) : ('90년대) 7.1 → ('00년대) 4.7 → ('10년대) 3.7

- 생산가능인구 감소, 물적자본 증가 둔화 → 잠재성장률도 하락 전망
- * 잠재성장률 전망(GDP 기준, '13 KfA, %) : ('11~'20) 3.6 → ('21~'30) 2.7

인구구조

'90년대 이후 65세 이상 인구비중 지속 증가

* 65세이상 인구 비중(%) : ('90) 5.1 → ('00) 7.2 → ('10) 11.0 → ('14) 12.7

-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4년 73.1%를 정점으로 지속하락 → 인구부양 부담 증가 전망
- * 생산가능인구 비중(% , '11 통계청) : ('10) 72.8 → ('14) 73.1 → ('20) 71.1 → ('30) 63.1

사회보장지출

복지제도 확대로 사회보장지출 급증

* 사회보장지출(GDP대비 %) : ('90) 2.8 → ('00) 4.8 → ('10) 9.0 → ('13) 9.8

- 인구고령화로 복지제도가 현행 유지되더라도 사회보장 지출은 지속 증가 전망
- * 사회보장지출(GDP대비 %, '14 보건사회연구원) : ('20) 12.6 → ('30) 16.7

통일

통일 이후 북한 인프라 구축 등 상당비용 소요 전망

* '90년 통독과정에서 국민부담률 2%p 내외 증가 : ('90) 34.8% → ('92) 36.9%

➡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자연스럽게 세수 증가하는 선순환구조 구축 필요**



19

2.2.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

성장 동력 확충

고용친화적 세제구축, 투자창업 활성화

- 일자리 창출 및 투자-고용의 연계 강화, 청년·장애인·비정규직 등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 기업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과세형평 제고

소득종류별 과세형평 제고, 적정 세부담 구조 전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간 과세형평성 제고
-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로 전환, 소득탈루 및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지속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성과평가 등을 통해 관행적 일몰연장 및 조세지출 신설 지양
- 제도개선 및 세정노력 강화를 통해 자영업자 세원양성화, 역외소득 양성화 등 추진
-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등 세목별로 다양한 과세기반 확대 추진

조세제도 합리화

금융세제 및 국제조세 합리화, 납세서비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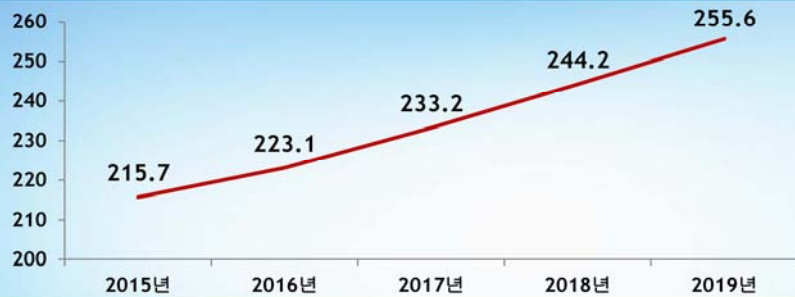
-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유형별 과세체계를 정비
- 국내외 소득간 과세형평성,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
- 조세법령을 쉽게 다시 쓰고,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며, 세법개정 효과 분석 강화



20

2.3. 중기 조세부담 전망

국세수입은 연평균 4.3%씩 증가하여 '19년 255.6조원이 될 전망



(단위 : 억원)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평균
국세수입	215.7	223.1	233.2	244.2	255.6	
(증가율)	(5.0)	(3.4)	(4.5)	(4.7)	(4.7)	(4.3)

중기 조세부담률 : 세수신장성 약화 등으로 18% 내외에서 유지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조세부담률	18.1	18.0	18.0	17.9	17.8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조 세 정 책 토 론 회

발제 2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01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I. 주요 개정안 내용

정부가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마련됨

- NABO는 세법개정안의 정책·세수효과, 비과세·감면정비 및 세입확충 방안 등을 분석

기본방향	추진전략
경제활력 강화	-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 소비여건 개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조정 등 - 수출투자 활성화: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등 -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등
민생안정	- 주거안정 재산형성 지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 과세특례 신설 등 -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 -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 일몰연장, 농어업용 석유류 등 면세 적용기한 연장 등

04

01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계속)

I. 주요 개정안 내용

기본방향	추진전략
공평과세	- 과세형평성 제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비과세 감면제도정비: 일몰항목 88개 가운데 19개 일몰종료, 8개 재설계 - 세원투명성 제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조세제도 합리화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일원화 등 -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

05



II

소득세 부문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01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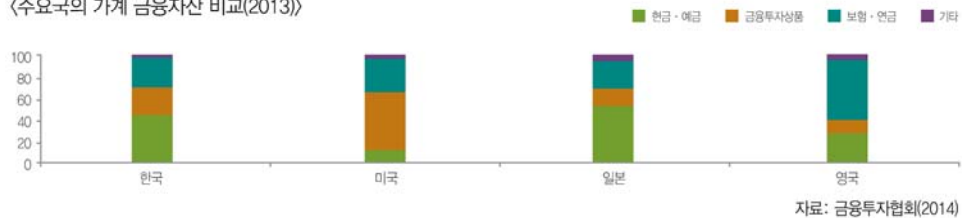
■ (개정안)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가입자가 선택하는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한 후 이자·배당소득에 세제혜택을 제공

- 근로·사업소득자가 5년 간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납입 가능
-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은 9%로 저율 분리과세

■ (분석) 저금리 등 경제 여건 하에서 개인의 저축·투자 유인을 증가시키고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도입 취지는 긍정적

- 가계 내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비중이 낮은 영국('99~) 및 일본('14~)은 이미 ISA를 도입한 점을 참고

〈주요국의 가계 금융자산 비교(2013)〉



07

01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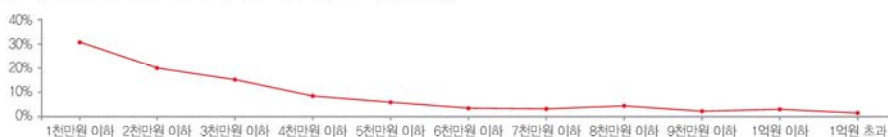
■ 다만, 동 제도의 취지인 신규저축 확대가 제한적일 가능성

- ISA로 인한 세후수익률 증가가 크지 않아 가입수준이 높지 않을 우려
 - 최대납입수준인 월 165만원 5년 간 납입 가정(연 4%, 단리 운용): 발생 소득 대비 연간 약 1.5% 수준 절감
- 차익실현을 위한 기존 금융자산 간 이동이 대부분일 경우 신규저축 확대가 크지 않을 것

■ 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가입 및 계좌유지를 장려할 방안도 보완할 필요

- 가입한도 제한(연간 2천만원)·금융소득 종합과세제 제외 등 소득형평성 측면의 고려를 한 점은 긍정적이나, 저소득층의 가입을 제고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재형저축('15년 일몰 예정)의 경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납입액 1,200만원까지 비과세임에도 연평균 납입금액은 약 240만원 수준에 불과한 점을 참고

〈소득수준별 가처분소득이 마이너스인 가구의 비중(2013)〉



주: 가구 가처분소득=소득-소비지출-비소비지출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4)

08

02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도입

Ⅱ. 소득세 부문

Ⅰ (개정안) 신규 투자하는 해외주식펀드의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10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환차익(현행 세율 14%)에 대해 비과세

- 도입취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을 유도
- 과거 도입사례(2007.6~2009.12):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제도 폐지
 - 도입 당시 해외주식펀드 규모 증가: 23조원(07.5) → 68조원(07.11)
 - 대미환율이 상승추세로 전환(원/달러): 923(07.6) → 1,043(08.6, 시행후)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개인계좌 639만건의 손실금액이 16조원에 이룸(09.7)

〈 대미환율 및 해외주식펀드규모: 2006~2010 〉



09

02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도입(계속)

Ⅱ. 소득세 부문

Ⅰ (분석) 최근의 국제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제도를 도입할 유인이 감소

-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 자본유출 우려, 최근 5개월 동안 원화가치 약 5% 하락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위안화 평가절하: 세계 주식 및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짐(펀드 위험 ↑)
 - 2015년 8월, 중국의 위안화 절하 이후 세계증시의 시가총액이 10일 동안 12% 감소
 - 우리나라 해외주식펀드의 64%(15.6월)가 변동성이 큰 브릭스 지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해당
-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는 투자감소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 우려

〈 대미환율 추이: 2015.1~2015.10 〉



10

03 상장주식 금융소득 과세강화

Ⅱ. 소득세 부문

■ (개정안) 상장주식 과세대상 확대 및 중소기업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 인상

- 유가증권 과세대상 확대: 현행(지분율 2% or 지분액 50억원 이상) → 개정안(1% or 25억원)
코스닥증권: 현행(지분율 4% or 지분액 40억원 이상) → 개정안(2% or 20억원)
※ 시행령 개정사항임
- 중소기업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현행(10%) → 개정안(20%)
※ 대기업 상장주식 세율: 20%(1년 미만 보유시 30%)

■ (분석) 소수의 과세인원, 주주 간 조세형평성, 선진국 사례 등 감안 → 개정안 적절

- 연간 과세건수 3,497건('11~'14년 평균): 상장주식 개인투자자(500만명)의 0.07% 규모
- 중소기업 주주(6억원), 대기업 주주(10억원) 간 평균 양도차익금액 차이 크지 않음
- 해외 선진국: 대부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 사례 없음

11



01 청년고용증대세제

Ⅲ. 법인세 부문

- (개정안) 2015~2017년 동안 정규직 청년고용 증가 시 1인당 대기업 250만원, 중견·중소기업 500만원의 세액공제 추진
 - 청년 고용율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체 고용율과 청년 고용율간의 격차 확대
 - 고용율 격차(전체 - 청년층): '09년 18.1%p → '13년 19.8%p
- (분석)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7)의 일환으로 고용효과를 제고하고자 한 것이나, 일시적 보조금 성격의 세제지원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
 - 올해 2%대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등 경기 부진 지속과 과거 유사 정책사례 등을 감안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04. 7.~’05.12.):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율 하락(3.1% → 2.6%)
 - “고용증대세액공제”(‘10. ~’11.6.): ‘11년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율 하락(3.5% → 2.7%)

13

02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합리화

Ⅲ. 법인세 부문

- (개정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및 손금인정 기준”을 도입
 - (도입취지) 업무용 승용차의 과도한 사적(私的) 사용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
 - (비용기준) 임직원 전용 차량보험 가입, 로고 부착, 차량운행일지에 따른 주행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
 - 필요경비 및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한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개인 또는 이용자의 개인소득으로 처분
- (분석) 업무용 승용차 관련 부당 비용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한 조치로 평가되나, 업무 관련성 및 비용인정 요건 보완 필요
 - 업무 관련성: 차량가액·배기량·업무주행비율 등을 통한 업무 관련성 기준 도입 필요
 - 비용인정요건: 로고부착,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 형식적·1회성 기준에 따른 제도 실효성 의문
 - 실제 업무주행 실적이 극히 낮아도 비용 인정되는 모순, 로고 등 탈착 주행 유인 존재

14



01 부가가치세의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확대

IV. 소비세 부문

■ (개정안) 철스크랩 거래에 대해 매입자납부방식으로 전환

- 부가가치세의 매출자납부방식(거래방식)을 악용한 자료상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
- 2008년 금지금거래를 시작으로 금 관련 모든 거래[고금(2009년), 금 스크랩(2015년)]와 재활용폐자원인 동 스크랩(2014년)에 적용·시행 되고 있으며, 이를 철 스크랩까지 확대

■ (분석) 세수탈루 방지를 통한 세원투명성 확보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납세순응부담 등의 고려가 필요

- (납세순응부담의 가중) 매입자납부 적용대상 외의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별도의 납세협력의무 부담, 별도의 매입자납부제도 전용 계좌설치(1개 지정금융기관) 등
- (어음거래에 따른 문제) 어음할인을 받는 경우 어음대금의 지급지 등이 불명확

0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세율 조정

Ⅳ. 소비세 부문

■ (개정안) 물가상승 및 소득수준 향상, 일부 품목의 사치재 성격 약화 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별소비세율 조정 등 추진

- 녹용·로열젤리, 향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석·귀금속, 시계 등 일부 과세물품의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 폐지와 함께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의 입장에 따른 개별소비세 세율의 인상을 추진

■ (분석) 보석·귀금속,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상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용량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폐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1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음을 고려
- 대용량 가전제품 중 상당수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으로 이미(2013년) 과세 제외대상이었다는 점(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감안

17



01 세수효과

I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3.9조원('16년 0.4조원)으로 전망

- 행정부 전망 향후 5년간 5.7조원('16년 0.6조원)
- (증가요인) 업무용승용차 과세강화(1.9조원),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0.5조원) 등
- (감소요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1.6조원), 해외주식투자펀드 도입(-0.8조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0.5조원) 등
-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규모(5년간 2.4조원): 전체 세수효과(3.9조원)의 61.5%
 - 정비액 기준 정비율 12.6%: 전체 감면액(3.8조원) 대비 0.5조원(연간 정비규모) 정비
 - 항목수 기준 정비율 30.7%: 전체 88개 항목 중 27개(19개 폐지, 8개 축소조정) 정비

※ 다만, 올해 일몰도래 예정인 조세지출항목(88개)의 총 규모는 3.8조원으로, 이 중 일몰이 연장되는 항목(69개)으로 인한 세수감소효과(-11.1조원)를 고려할 경우,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3.9조원에서 -7.1조원으로 감소

- 세법개정안에 따라 일몰이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 동안의 감면액 만큼 세수는 감소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의 세수효과 추계방식

19

02 세수효과 비교

I 세법개정안에 대한 NABO와 행정부간 5년간 세수효과 차이는 -1.7조원임 : NABO(3.9조원), 행정부(5.7조원)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간 세수효과 비교

(단위: 억원)

	NABO(A)	행정부(B)*	차이(A-B)	비고
합계	39,424	56,578	-17,154	
소득세	14,357	19,966	-5,60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288억원) 해외주식투자펀드(-2,770억원) 등
법인세	20,950	15,002	5,948	-
부가가치세	7,907	13,727	-5,820	철스크랩 납부특례(-3,987억원) 등
기타 세목	-3,789	7,883	-11,672	개별소비세 과세조정(-4,177억원) 등

주: * 행정부가 발표한 전년대비 세목별 세수효과(2015.8)를 이용하여 NABO에서 재구성

20



01 세법개정안 종합평가

VI. 평가

- (정책 실효성)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현 경제여건상 시의적절하나, 정책의 실효성은 일부 제한될 가능성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투자펀드 비과세 등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될 우려
 - ISA 도입,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등은 형평성 또는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필요
- (세입확충 미흡)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 등으로 인해 예년 대비 세수효과는 부진
 -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총 1조 892억원(행정부 기준)으로 최근 3년간('12~'14년) 세법개정안의 평균 세수효과인 2.2조원의 1/2 수준임
 - 올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율이 항목수 기준으로 31%(총 88개 항목 중 27개)이나, 감면액 기준은 12.6%(총 3.8조원 중 0.5조원) 수준임

01 세법개정안 종합평가(계속)

I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필요) 안정적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필요

- 행정부 전망 2015~2019년 중 조세부담률 17~18%대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복지지출 비중이 낮았던 2000년대 초반의 세부담 수준
- 경제의 저성장세 지속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와 복지 재정수요 증대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세부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과 추가적인 세원조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조성 필요

▶ 특정 세목 위주의 대안 보다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세제개편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조 세 정 책 토 론 회

토론 1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 세 정 책 토 론 회

토론 2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조 세 정 책 토 론 회

토론 3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



201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

※ 총평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총평을 한다면, 개편의 범위로는 소폭, 개편의 성질로는 조세구조 자체에 대한 구조개혁이라기 보다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fine tuning으로서, 대체로 무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시장경제 하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의 첫 번째 조건으로 시장친화적 정책효과를 들 수 있는데, 금번 세제개편안은 전반적으로 시장친화적 개편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작년 개편사항 중 일부 항목(예: 담배 관련세, 기부금 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보완작업, 부가가치세의 면세 범위 조정, 그리고 세율조정을 위한 준비작업 등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음.

※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세부적 견해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 중 가장 인상적인 개편방안은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영역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부정사용 가능성을 축소하고자 한 부분, 소비활성화를 통한 시장활력 개선 등을 위한 개별소비세제 개편방안 등임.

특히 비업무용차량에 대한 비용 인정의 불합리성에 대응한 개편안 등은 조세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부 납세자들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교정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됨. 일각에서는 비용공제의 상한을 두고자 하는 주장도 있으나, 통상마찰·분쟁의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비차별적 시장접근(non-discriminatory market access)과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두 가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인정 한도를 둘 때, 한도 적용을 받게 되는 자동차가 전량 수입품이거나 또는 국내생산품이 적용되더라도 전체 시장점유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적용된다면, 두 가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실제로 1990년대 초반 해도 차량가격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취

득세율을 2배로 중과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GATT 체제 하에서 불공정 무역 규제의 하나로 지목되어 폐지된 바 있음. 시장 논리를 떠나 초고가자동차는 거의 전량이 수입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WTO 차원에서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액한도 설정방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개편 가운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한시적) 확대 방안의 경우, 소비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방법론 상으로는 적정성에 대해 다소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음.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 및 과표양성화 등의 정책목적을 위해, 조세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벌써 상당수 소득자들이 소득 지원·지지를 위한 일종의 소득세 경감방안으로 인식하면서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항구화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임. 일반적인 조세체계와 달리 비정상적인 측면이 크므로 폐지가 바람직함.

지난 세제개편에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개편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으로서 조세이론상 또는 기능상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방식이 보다 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함.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은 일종의 인적자본의 축적·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비용공제로 인식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조세이론상 타당하기 때문임. 기부금 공제의 경우, 기부장려 차원의 세제지원방안에 해당되므로 조세이론상 세액공제 방식이 타당하지만, 기부금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부장려 목적에서는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훨씬 효과적임. 세액공제를 전환하게 되면 소득세 내에서는 소득세 중수효과가 일부 있지만, 총체적인 기부금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 소요 증가효과는 소득세 중수효과를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전반을 고려하면 부정적 효과가 더 큼. 금년도 기부금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 우연이라기 보다는 기부금의 소득탄력성이 1을 상회한다는 경제이론에서 이미 예측된 부분임.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기부금을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로 하는 것도 기능상 소득공제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고 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임.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담배 관련세의 세율이 대폭 상승하였음. 그러나 흡연억제를 위해서는 일시적 세율 인상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연속적

· 영속적 세율인상을 통한 지속적인 가격인상이 필수적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가격인상률이 80%에 이르러 초단기적인 충격이 있지만, 추가적인 가격인상안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흡연비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금연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음. 최근 2014년의 담배세 인상안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오히려, 추가적·지속적인 담배세 인상을 통한 가격인상안의 미래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경제발전 단계에 맞춰 조세구조도 변화가 필요함. 우리 경제가 성장하여 선진경제로 편입되어 몸집은 이미 어른이 되었으나, 조세체계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아직 사춘기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옷이 몸에 찢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 즉 현재의 개별소비세는 수십년전 도입될 당시에는 사치세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였고 또한 성과도 좋았음. 그러나 선진국에 진입한 현 단계에서는, 명분과 실체가 분리되면서 오히려 시장비친화적인 기능을 나타내고 있음. 담배세, 주류세, 유류세(환경세 및 에너지세 등 포함), 그리고 건강세(일명 비만세 등)의 측면으로 개별소비세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즉, 우리 경제의 몸집과 위상을 생각할 때 사치세는 지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우리 경제 구조상 사치세의 지속과세는 오히려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저해하여 생산·수출 측면에서의 (-) 효과가,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 효과를 압도하여, 총체적으로 실이 득보다 더 클 것이기 때문임.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축소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쉬움. 초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의 기본 자격 중 하나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세수기반 확보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세와 낮은 세율이 가장 큰 현안임. 세율인상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면세범위의 대폭적인 축소가 필요한데, 금년도 세제개편안에는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

사업소득세 과표양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현황을 보면, 자영사업자들이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있지만, 소득탈루에도 불구하고 실효세부담은 근로소득자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됨. 이는 암묵적으로 탈세를 전제로 사업소득에 과소한 소득공제 적용하기 때문임. 즉, 소득탈루에 비해 소득공제 수준(면세점)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임. 이는 소득 탈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소득자들이 역차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1990년대말~최근까지의 과표양성화 정책은 주로 채찍에 의존한 정책이었음. 최근 과표양성화 추세가 둔화된 것은 세부담 역차별로 인해 포화·피로 현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추가적 과표양성화 위해서는 채찍 외에도 당근(소득공제 점진적 현실화)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과표가 양성화하더라도 세부담의 공평 실현을 위해서는 총소득세수 증가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 중장기적으로 근로소득세 실효세부담률의 정상화(즉, 상향조정)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공제수준, 세율(과표)구간을 당분간 동결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조 세 정 책 토 론 회

토론 4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I. 전체적인 방향에 대하여

- 정책목표로 경제활성화와 함께 공평과세도 표방하고 있으나 공평과세는 대체로 허울.
-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존의 비과세감면을 연장하면서 또 새로운 비과세 감면 도입.
- 이러한 비과세감면제도의 수혜자를 찾아보면 대체로 대기업/자산가 계층.
- 이들 비과세감면제도들의 경제적 효과가 공평과세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2015년 세제개편안은 공평성 관점에서 부정적.
- 2015년의 세법개정을 통하여 조세체계의 왜곡은 전반적으로 더 심해지고 있음

II. 세법개정안 개별 분야의 내용

1. 청년취업지원세제: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대기업 1인당 250만원)

- 이런 식의 임시방편적인 청년취업지원이 의미가 있을까? 기업이 소액의 세액공제 때문에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는가?
- 인력채용은 매우 중요한 기업의 의사결정이며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큰 비용이 소용이 되는 일이라서 소액의 세액공제 때문에 결정을 달리 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청년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어차피 채용하려고 했던 기업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세수감소.
- 동 제도가 영향을 발휘한다면 그것의 반작용은 청년이 아닌 경력직 구직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경제적 의미를 가짐.
- 또 줄여나가야 하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이름을 바꾸어 지속시키는 성격

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 세습자본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개정안이며 우리사회의 아킬레스건인 형평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

3. 외국관광객 유인 세제지원: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유인효과가 없고 세수만 감소 → 내국인 역차별을 감행하면서 시도할 경제적 효과가 의심스러움: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면 외국인수요자들에게 10%의 가격인하효과가 나타나나 이 효과가 10% 이상의 수요증가로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음
- 성형수술의 원가요인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수요증가가 나타나야.
- 성형수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가격탄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성형수술 수요자는 10%의 가격 차이에 반응하기보다 수술의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
- 또 성형수술차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 관광하지 않고 수술 후 바로 출국하는 것이 일반적. 수술부위의 붓기 등 표시가 나기 때문.

4.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가 올바른 정책방향인가?
- 에너지 정책에 입각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차등화는 바람직
- 특수고가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유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

5. 해외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주식의 매매 및 평가/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전문펀드 제도의 도입

- 자본에 대한 국가정책의 정체성과 일관성이 실종 → 도대체 한국 정부의 자

본(외국자본 및 내국자본)에 대한 정책방향이 무엇인가?

- 외국자본 유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 법인세율의 경우도 낮추지 않으면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논리로 필요성을 주장.
- 그런데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를 허용한다면 자본이 해외로 나가라고 장려한다는 것인데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이 자본이 과다한 상황이라면 먼저 외국자본에 주는 혜택이나 법인세율 정상화 같은 것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그래도 국내에 자본이 과다하면 해외투자활성화 정책을 채택해야.

6. SOC 확충, 설비투자, R&D 비용 등에 대한 세제감면 기한의 연장 등

- 경제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음.
- 개정안에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해결하겠다는 단서가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행정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인수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다는 규정은 기술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남용의 우려가 큼.

8.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전환 세제지원

- 중소기업이 신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경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사업영역 전환(신사업영역진출)이 지원해주어야 하는 합리적 경제적 근거가 되는가?
-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이러저런 비합리적인 명분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우선 오래 동안 자기영역을 지키고 사업을 하는 기업에 비하여 다른 사업영역에 진출하는 기업이 경제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나은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ISA) 도입

- 민생안정,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명분으로 동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결과적으로 자산가를 위한 제도 → 연간 가입한도 2000만원 이하. 이 정도의 저축을 매년 할 수 있는 소득자는 소득상위 계층.
- 가입기간(최소 5년) 동안 누적되면 자산의 규모가 커짐.
- 소득 200만원 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과세 → 현재도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14% 저율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을 더 저해하는 역방향으로의 정책.

10.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 임대주택공급활성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자산가인 임대주택소유자(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토지를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하고 개인은 양도세 10% 감면.
- 혜택은 과다하나 과연 이를 통한 임대주택공급활성화 효과가 발생할까?
- 경제학에서 임대주택은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재화로 판단: 이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공급을 늘리는 경제적 효과가 없고 다만 고스란히 세수감소로 연결.
- 장기적으로는 임대사업자의 공급에 변화 가능: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시장의 경기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근거로 임대주택사업에서 물러나려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이를 세제적 수단으로 돌리기 매우 힘들고 세수손실만 커짐 → 이 경우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감소분 만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서 상쇄시켜야.
- 필수재의 성격을 가진 주택은 공급 및 수요의 작은 격차에도 가격변동이 심함 → 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시장의

변동성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함.

- 임대주택 공급후 일정기간 후 분양하는 방식을 지양할 필요.

11. 중소기업고용유지를 위한 세제지원, 일자리나누기 지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 중소기업고용유지를 위한 세제지원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50% 세액공제, 일자리나누기의 경우 감소하는 임금의 절반씩을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각각 공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임금증가액의 10% 세액공제 허용
-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제도로써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 동시에 세제로써 동 지원책이 가지는 한계를 의식하여야 하는데 많은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이 납부세액이 없거나 낮는데 이 경우 동 제도는 유효성이 없음.

12.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 현재의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이미 높은 수준.
- 동 제도 개정으로 정부는 이 한도를 최대 60% 까지 확대하고자 함.
- 음식점업의 원가 비율에서 식자재구매비용이 절대 60%에 달할 수 없음.
- 부동산정책 실패로 자영업자들에게 제일 큰 어려움은 높은 임대료.
-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식자재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어서 해결?
- 부가가치세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지원책: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가격의 10%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이 금액이 정부에 들어가지 않고 음식점업자들의 소득보전에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옴 →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
- 자영업자가 음식점업 밖에 없나? 형평성의 문제도 야기됨.

13.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 현재 사업소득자들은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를 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음: 이에 비하여 근로소득자들에게 동 공제는 당연히 허용됨.
-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별 경제적 의미가 없음.
- 동 제도는 사업자들을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명백하게 차별하는 정책으로서 이 부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
-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공제가 허용되도록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14. 영농상속공제 한도 15억원으로 확대

- 농어업 경쟁력강화 명분으로 영농상속공제 한도 15억원으로 확대
- 이는 지나친 혜택으로서 이제는 돈 많이 버는 농민, 자산가 농민은 농민이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과 제도가 바뀌어야 함.

15.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 동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한 정책방향
- 그러나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가입하고 기업로고 부착하면 100% 비용을 인정하는 규정은 너무 쉽게 빠져 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
- 시행시기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년부터 하기로 하고 그리고 추계과세신고자는 제외 → 이 규정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 많이 약화되는데 현재 사업자 중에서 추계과세자의 비중이 크고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자도 추계과세자인 경우 많음.
- 추계과세자에 대한 지나친 우대로서 근거과세와 과세투명성, 과세표준 양성화를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꼽히는 납세자그룹의 확대를 조장하는 역할 수행.
- 업무용 차량의 비용 제한의 방법으로는 비용이 인정되는 차량가격의 상한선

을 정하고 동시에 업무 사용비율만큼 인정해주도록 하여야 함 → 세법의 순소득과세원칙, 사실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합치됨.

- 그러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음.
- 납세협력비용을 낮추어주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50%만 비용 인정
- 납세자가 그 이상으로 업무에 사용하므로 그 이상의 비율로 비용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본인이 이를 입증하도록 의무 부여: 희망하는 사람은 운행일지 작성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함.

16.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 세제개편안은 대주주범위의 기준을 1%, 25억원으로 낮추어 대주주의 범위를 소폭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를 대주주 범위 1%, 10억원으로 더 확대해야 함.
- 그리고 20% 단일세율과세는 지나친 혜택인데 정부안은 이 세율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함 →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체계와 왜 달라야 하나?
-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반드시 종합과세해야 함 → 그렇게 안할 하등의 경제적 근거가 없음.

17. 종교인소득

- 정부안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기타소득의 개념(일회성 소득, 지속적인 근무처와 무관한 소득 등)과 배치되므로 부적절.
- 종교소득에 허용하려는 필요경비의 비율도 근로소득공제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관대함.
- 그리고 원천징수는 당연히 의무화해야 함.
- 이 모든 사안에서 형평성이 문제시 됨.

18. 역외탈세방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면제요건 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금액은 여전히 10억원 이상: 미국은 신고대상이 만 달러 이상 → 우리나라는 미국의 약 100배의 금액에 대하여만 신고의무를 부여.
-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소득이 미국의 100배인가? 아니면 해외소득 세금탈루에 대한 과세당국의 의식이 미국에 비하여 100배 관대한 것인가?

19. 상속증여재산 평가 관련 절차 개선

- 조세제도 합리화를 명분으로 상속증여재산 평가 관련 절차 개선에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1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 납세자에게 지나친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
- 우리나라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관행으로 보아 의뢰자의 의도대로 평가액은 낮아지게 되고 동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은 향후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음.
- 현재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공정과세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감정평가비용을 감안한다면 기준을 3억이나 5억 정도로 잡아서 그 보다 규모가 작은자산의 경우 1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음.

20. 개인의 비사업용 용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개인이 보유하는 비사업용 용지는 명백한 투기적 보유로서 이에 대한 부동산정책은 일관성있게 유지될 필요가 있음.
- 과거의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경제에 큰 어려움을 야기 → 사업자의 높은 임대료비용, 서민들의 높은 주거비용.
- 이러한 투기적 수요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이 다시 급등하지 않도록 비사업용 용지에 대하여 기존의 정책(장기보유특별공제 불허)은 유지되어야 함.

Ⅲ. 조세제도의 체계에 대하여

1.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

- 법인세(직접투자자에 대한 과세)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간접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이며 근로에 대한 과세와 크게 구별됨.
- 글로벌 경제하에서 개별 국가들의 자본은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 →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법인에 대한 과세를 포함한 자본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나라로 자본의 유출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자본소유자보다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논리가 언론을 장악.
- 위 논리의 전제조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성과 자본의 국제적 움직임에 대한 법인세율이나 다른 자산세율(이자나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의 영향력 →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
- 많은 연구들이 자본의 이동성에 기초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정작 자본의 이동성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 뚜렷: Feldstein/Horioka의 연구(1980) 등¹⁾
 - * 국제간의 자본의 이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SRC 지수(savings retention coefficient)를 사용: 국내저축과 국내투자 간의 상관관계.
- 두 번째로 자본의 국제적 움직임에 법인세율이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 FDI에 대한 법인세율의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에서 많은 연구들이 조세를 직접투자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보는 연구들도 또한 많음.
- 이에 비하여 설문조사에 기초한 연구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조세는 직접투자자의 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결론.²⁾

1) Feldstein/Horioka, Domestic Saving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Economic Journal 90, June, 1980.

2) 법인세부담과 투자의 관계에 대하여는 수많은 실증연구가 지금까지 수행되었으나 연구결과에서는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표적으로 Gordon/Hines(2002)는 세부담이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인 안중석(1994)과 이용섭(1999)의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한편 서베이연구(기업의 투자적지의 결정에서 법인세부담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하여 투자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답변으로 분석)들에서는 법인세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조건(시장접근성, 노동력 등) 중에 뒷 순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KPMG(1993)의 연구분석에

추가적인 고려: 1. 국제적인 이중과세방지체계, 2. 현재 국내자본시장상황

- 국제적인 이중과세조정체계에 법인세를 비롯한 자본소득에 대한 개별국가들의 독자적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가 존재.
- 법인세 구조와 국제간의 이중과세조정체계는 거주지국과세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 조세조약이나 국내세법에 근거하여 국제간의 이중과세를 대체로 외국 세액공제제도를 통하여 해결
- 이 경우 원천지국과세의 영향은 거주지국의 외국세액공제제도로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던지 간에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수준은 거주지국의 수준으로 균등화됨.
- 세금부담을 고려하여 투자지를 옮길 이유와 개연성이 없어짐.³⁾

〈표 1〉 외국세액공제제도의 내용

소득의 종류	원천지국 과세	거주지국 과세 (외국세액공제제도)	한미조세조약의 예(%)
배당	제한세율	거주지국의 세율과 제한세율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	15 10(10% 이상 지분소유의 법인간 배당의 경우)
이자	제한세율	상동	12
사용료 소득	제한세율	상동	15 10(저작권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재생산 권리의 사용료)
주식양 도차익	비과세	-	투자회사 및 지주회사를 제외하고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자료: 자체 작성

서는 조세의 유리한 점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내수시장, 금융안정, 노동력 수준 등에 비하여 훨씬 뒷 순위인 12번째에 위치하며 국내의 조사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여주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9). 외국의 일부 연구들에서 법인세가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더라도 이 분석은 이미 오래전 법인세율이 상당히 높았던 시기(주요 국가에서 40% 이상이던)를 포함한 것이어서 현재 20%에 위치한 법인세율 수준에서 같은 유효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유찬, 법인세는 과연 투자를 저해하는가?, 재정정책논집, 제17집 2호, 2015.

- 3) 이러한 연구결과는 해외에도 있지만 국내의 김유찬(1994), 안종석(1994)의 연구에서도 이미 90년대에 제시되었다. 김유찬,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4; 안종석,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4.

- 이 표의 내용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은 90년대 25% 수준의 원천징수 세율을 현재의 14% 수준으로 낮춘 것은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는 것! 단지 국내자본에만 영향을 미침.
- 그리고 한국경제는 외국자본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더 이상 아님 → 국내에서 충분하게 축적된 저축자본이 투자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

예: 최근의 두 차례의 국회토론회

1. 금융자산의 해외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2015년 9월 3일에 열린 국회 토론회.
 2. 국내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무엇이 필요한가? 2015년 10월 14일 국회입법조사처.
 - 해외로 자본수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부와 금융산업이 주도하여 사회여론과 입법기능을 가진 국회에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 해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반영하고 있음: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해외주식전용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안 포함 → 신규 투자하는 해외주식펀드의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10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환차익(현행 세율 14%)에 대해 비과세
 -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중장기 조세제도 보고서에서는 국내자본의 해외투자에 대하여 외국소득면세제도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배경: 국내경제에서 자본의 초과공급

- * 예 1: 국민연금에 누적된 기금이 국내자본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수준. 국민경제 교란/위험요인!!
- ** 예 2: 기업의 현금성자산 규모: 10대 그룹의 기업(비금융업) 자산구성에서 보면 총자산 1,057.8조원에서 당좌자산의 비중 28.1 % (즉 298조원 수준)⁴⁾

4)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2015.3.24. 추출

- 또 개인 차원에서는 노후 불안, 기타의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들의 저축동기가 강하며 국민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초과저축 상태!! → 이를 감안하면 이러한 해외자본수출에 대한 지원 요구는 이해되는 측면이 존재함.
- 그러나 조세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내용 → 기존의 국내 조세체계(자본에 대한 호혜적 과세)는 국내경제의 자본부족상태, 즉 초과수요를 전제로 짜여진 것으로 해외 자본수출에 대한 정책지원은 이를 수정한 연후에야 가능!!!
- 그렇지 않으면 해외자본유인이라는 정책목표가 사라진 상태에서 자본에 대한 특혜적 과세로 큰 세수손실과 형평성 훼손이 지속되는 것.

2. 소득10분위에서 중상위 소득계층에 조세정책의 일관성 문제: 개인소득세 감면자 비율과 자산형성의 지원

-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보면 2013년 근로소득자 16,359,770명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가 11,238,611명, 그리고 과세미달자가 5,121,159명으로서 과세미달자 비중은 31.3% 수준 → 면세점 이하의 납세자 비중은 2014년 소득세공제제도의 개편과 2015년 이에 대한 제도 수정 조치 이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 거의 50% 육박.
- 2013년 소득십분위자료(홍중학 의원실 제공 소득백분위자료에서 도출)에서 우리나라 소득8분위와 소득9분위의 경계 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연 3,517만원, 통합소득의 경우 연 4,642만원으로서 모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과세미달자 포함 총 16,359,770명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연 1,153만원, 과세미달자 포함 총 19,669,055명 통합소득자의 중위소득은 연 1,975만원.
- 소득 5/6/7분위 근로소득자 및 통합소득자의 경우 매우 낮은 실효세율: 3% 이하 → 거의 면세자에 가까운 수준.
- 분위별 1인당 근로소득금액과 통합소득금액은 9분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0분위에서 크게 증가.
- 9분위와 10분위의 근로자의 경계소득은 연 5,347만원이고 상위 1%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연 2억 209만원으로 급상승.

- 마찬가지로 통합소득자의 경우도 9분위와 10분위의 경계소득이 연 6,731만원이지만 상위 1%의 통합소득은 연 3억 2,597만원으로 급격히 증가.
- **2015년 세법개정안에 제안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존의 재형저축과 달리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5년간 매년 2000만 원 한도로, 수익 2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는 것이 특징.
- 20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세율이 적용.
-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뿐 아니라 추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
-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감안하면 ISA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활용 → 이 정도라면 그 수혜층이 소득10분위에서 어느 계층이라는 것은 명백함 - 기존의 재형저축이 소득5/6/7분위의 세부담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ISA는 소득9/10분위 중 중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수혜자로 포함됨 → 금융소득종합과세 인원은 2013년 기준 14만명 수준이며 통합소득자는 1970만명 수준!!
- 소득분위별 소득세 관련 방향의 정립이 필요: 면세점 이하의 납세자비율을 줄이려면 소득 4분위 이상의 계층에 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은 지양해야 함 → **소득의 상대적 수준이 중요한 기준.**
- 소득4/5/6/7/8분위도 연소득 5000만 이하 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더 이상 면세점 비율에 대한 언급을 하면 안됨 → **소득의 절대적 수준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시각**
- 어떤 경우라도 소득 9/10분위에 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효율적이지 못함 → ISA!!

IV. 세법개정의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석에 대하여

- 정부는 세부담 귀착의 분석에서 이번 2015년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통하여 총 1조원 정도의 증세효과가 있으며 대부분 고소득자/대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이 분석의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부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어떤 제도의 세부담 혹은 경감효과의 귀속에서 매우 편파적인 분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고소득자/자산가/대기업의 혜택과 중저소득근로자/자영업자의 부담을 고소득자/자산가/대기업의 부담과 중저소득근로자/자영업자의 혜택으로 호도하는 경우가 많았음.
- 정부는 세부담귀착 계산에 대한 세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개정되는 개별 제도별로 구분된 세부담 귀착 자료.
- 예를 들어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의 도입의 혜택을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
- 그러나 매년 2000만원의 금융자산을 동 계좌에 가입하여 5년 이상 누적 금액을 동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다면 이는 소득상위계층(8-10분위)의 근로자 → 자산가 계층에 해당함!!
- 마찬가지로 해외주식전용펀드의 조세혜택도 소득상위계층(8-10분위)의 몫.
- 이 두 가지 제도의 조세감면 효과는 향후 5년간 약 2.4조 정도로 추정.
- 이 조세감면 효과를 정부는 어디에 귀속시켰는지? 서민/중산층/중소기업 혹은 고소득자/대기업?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혜택도 정부는 임대주택 수요자에 대한 혜택으로 분류하였을 것으로 보여짐!!
- 또 정부는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을 한 그룹으로 그리고 고소득자/대기업을 다른 한 그룹으로 분류 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어려운 회사가 많으나 중소기업의 소유자들은 부유한 자산가들이 많아서 동 분류에 문제점이 있음.

조 세 정 책 토 론 회

토론 5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15년 세법개정안 검토 의견

1. '15년 세법개정안의 기초와 특징

1) 전반적인 기초

□ 올해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방향은 ‘경제활성화 기초 하의 소극적 세수확충’으로 압축될 수 있음

- 세수변화의 증가방향으로 보았을 때, 외형적으로는 세수확충을 모색
- 세수증가의 규모가 미미하여 세수확충 의지는 다분히 소극적
- 세목별 세수효과에서 개인소득세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법인세가 가장 적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 세수변화의 연도별 시차효과에서도 주된 세수증가의 시점을 내년('16년)보다는 내후년('17년)으로 늦춤으로써 경제활성화 기초 조성에 힘씀

□ 세수변화의 방향과 규모

- 개정안으로 인해 일단 세수는 연간 1조900억원 순증가(+)
- 세수증가의 양적 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최소화된 세수확충에 해당
- 1조원 내외의 세수증가는 현재의 국세 규모와 변동성을 볼 때 유의미한 변화라고 거의 느낄 수 없음

*2015년 국세수입 221조원(예산기준)의 0.5% 이하

- 비과세·감면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의 전반적 세수 효과는 1조900억원으로 작년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5,680억 원보다 2배 정도 많음

□ 세수변화의 구성

- 세목별 세수효과의 구성을 보면, 전체 세수증가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5%(3,800억원)로 가장 높음
-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중간인 29%(3,135억원)를 기록한 반면, 법인세의 비중은 22%(1,573억원)으로 3대 세목 중에서 가장 낮음
- 이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경제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임

□ 세수변화의 시차

- 세수효과의 연도별 분포를 보면, 개정 후 첫해인 16년에 증가하는 세수(5,561억원)보다 그 다음해인 17년에 증가하는 세수(8,353억원)가 약 1.5배로 더 큼
- 이러한 현상은 법인세목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법인세 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1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전체적인 세부담의 증가도 제한적이지만, 이것이 경기적인 측면에서 주는 단기적인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

〈표 2〉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단위: 억원)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이후
계	10,892	4,789	9,710	△386	△1,687	△1,534
소득세	3,786	2,514	1,083	1,904	△805	△910
법인세	2,398	△618	6,852	△2,330	△882	△624
부가가치세	3,135	1,302	1,793	40		
기타	1,573	1,591	△18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요약자료

- 종합적으로 볼 때, 세법개정안에 담긴 정책적 지향은 실질적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우선한 셈
- 연초부터 예상된 세입결손과 추경편성 과정의 논란으로 인해 세수확충은 사실 시급한 정책과제였음(지난해까지 3년 연속 총 2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지속, 올해도 최소 3조원이상의 세수결손 예상)
 -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은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보다 더 큰 폭의 세수확충을 예상하고 있었음
 - 개정안 발표 이전에 정부가 언급한 세수확충 규모가 1조원대로 최소화된 것은 기업과 가계의 세부담 증가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언론과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대기업 위주의 R&D세액공제를 축소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의식한 것으로 보임
 - 보다 직접적으로 정부가 내건 대표적인 2개의 개정안이 각각 청년고용 창출과 금융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상을 감안할 때, 이번 세법개정안은 실질적으로는 경제활성화가 세수확충에 우선시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2) 주요 특징

□ 고소득자와 대기업 위주의 세부담:

- 정부발표에 따르면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25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들 계층의 숫자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부담 인하효과는 체감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반면,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세금증가는 전체적으로 1조5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고소득자가 6,400억원, 기업이 4,100억원을 나누어 부담할 것으로 보임

〈표 3〉 세부담 귀착

(단위: 억원)

서민·중산층 ¹⁾ /중소기업		고소득자/대기업		기타 ²⁾	계
△1,525		10,529		1,888	10,892
서민·중산층	△1,400	고소득자	6,400		
중소기업	△100	대기업	4,100		

1) 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5,900만원 이하)

2)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기재부 발표자료(2015.8)에 근거

□ 증세 vs 증수(세수증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수가 증가하지만, 그 규모와 방식으로 볼 때 증세보다는 세수확대가 더 적절한 표현
- 세수증가 규모가 1조원 정도라 소규모 세수확충에 해당
- 방식도 주로 기존의 비과세 조항이나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의 축소나 폐지 등을 취하고 있음(올해 일몰 도래하는 감면항목 88개 중 27개를 폐지하거나 재설계)
- 따라서 연례적인 조세감면 정비 또는 축소개편에 해당
- 비과세·감면 관련 증가하는 세수는 9,480억원, 감소하는 세수는 497억원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고용과 금융 부문 활성화에 세제유인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

- 개정안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들은 청년 취업이나 창업, 그리고 중소기업부문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
-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구조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청년층의 고용 창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
- 또한 장기재직자, 정규직 전환,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세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고용을 촉진
- 다음으로 눈에 띄는 사항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의 제공

에 있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펀드 투자손익 환매시 통산과세 등이 이에 해당

□ 세법개정안은 고용과 금융 부문 이외에 소비와 수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 일부 품목 개별소비세 폐지 및 기준금액 정상화
- 수출중소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 자발적 사업재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경영애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등에 대한 지원 등

□ 세원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세법개정 항목들은 대부분 세제 정상화 또는 합리화 차원의 과세강화에 해당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 연구행정·지원 사무 종사자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등

□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국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납세자 편의나 권익 제고를 위해 추진될 예정

2. 쟁점과 과제

1) 세입확충과 증세논의

- 올해 세법개정안의 역점이 경제활성화에 놓이게 되면서 재정건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세수확대 차원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 지난 3년간 20조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을 통한 세수확충 규모는 미진하다는 평가
 - 여기에는 아직 부족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가계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
 - 또한 담배세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이후 정부가 또 다시 증세를 거론하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
 - 더욱이 내년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카드는 정치적으로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결과적으로 정부가 공언한 바 있는 세수확충 노력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미온적인 감면축소로 나타남
- 세법개정안에서 실질적인 세수확대 방안이 빠지면서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계속된 서민증세 논란으로 인해 본격적인 세수확대 부담은 그나마 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대기업 부문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 야당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미흡한 재원대책을 공격하며 대기업 부문의 법인세율 인상을 계속해서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임
- 지난해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2%는 일반 대기업의 실효세율 17.3%과 중견기업의 16.5%에 비해 낮은 수준(2013년 기준, 기재부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전의 대기업 실효세율은 19% 선으로 추정)

- 정부 발표대로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법인세가 연간 2,400억원정도 늘어난다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0.1%p 정도 상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과거 세법개정에 따른 법인세 증가(2013년 1조200억원, 2014년 3060억원)보다 작은 규모
 - 일반국민과 야당의 기준으로 이러한 수준의 세부담 인상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기업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인상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세율인상 대신에 감면축소를 선호하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논쟁은 결국 대기업의 R&D세액공제율을 인하하는 선에서 타협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와는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세논쟁은 향후에 더욱 심화될 것을 보임
- 적어도 현 정부의 임기 동안에는 세제당국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낮음
 - 결국 증세논쟁은 총선과 차기 대선을 전후하여 큰 흐름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임
 - 다만 증세가 정치적인 문제로만 다루어지게 되는 경우 경제적 부작용이 클 수 있기에 전문적인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의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2) 고용 중심 세제지원

- 이번 세법개정안에 고용, 특히 청년층이나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된 점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임
- 청년층의 공식 실업률이 10% 이상이고 취업준비생이나 잠재구직자가 포함된 체감실업률이 23~38% 이른다는 통계청 발표와 같이 청년실업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음

- 2013년 기준 핵심생산인구(30~54세) 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 실업자 비율을 보면, OECD 주요국 평균이 2.3인데 반해, 우리나라가 3.51로 가장 높은 상태임
 - 정년연장법이 적용되는 2016년부터는 정년이 55살에서 60살로 5년 연장되어 인건비 부담의 증가를 느끼는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음
- 고용문제의 핵심 키는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데, 기업들 본인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고용을 늘려나가기란 매우 어려움
- 결국 가능한 방법은 기업의 고용유인을 정책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수단임
 - 세제나 재정 지원을 통해 자신에 필요한 신규인력을 고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드는 것이 핵심
 - 또한 임금수준이나 근로 및 복지 여건의 차이로 인해 취업을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하여 조기에 취업하게 만들고 안정적으로 근로하게 만드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설비투자 중심의 현행 세제 지원제도를 고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예를 들어, 대규모 설비투자 위주의 제조업에서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세제 지원의 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함
 - 서비스 부문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에 현재의 투자세액공제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고, 연구개발비의 비중도 작기에 R&D세액공제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고용 인력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

- 현재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제도의 활용률이 낮고, 실효성이 높지 않아 이를 제고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
 - 예를 들어,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고용관련 조세특례의 규모가 1,0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실적치는 이에 한참 못 미친 402억원에 불과하여 전망치 대비 활용률은 38.1%에 머물렀음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 실제로 제공된 감면규모가 정부 전망치(747억원)의 4.8%(36억원)로 나타난 것은 실효성 낮은 제도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아 대부분 면세자나 매우 낮은 소득세를 부담하기에 이들에 대한 감면혜택 제공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조치라 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안에 소득세 감면율을 종전의 50%에서 70%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시 됨

-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이러한 차원의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평균연봉(약 2500만원)의 25%(500만원)을 정부가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 해당
 - 문제는 중소기업의 채용 의지보다는 청년취업희망자의 의지나 선택에 있기에 지원 대상 중소기업들이 청년입사자들의 급여를 얼마나 올려줄 것인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정부가 2004~2005년 한시적 적용된 고용증대세액공제 효과에 기초해 이번 제도로 연간 3만5000명의 청년 정규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최근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다소 낙관적으로 보임
 -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적자기업이 많기에 단순한 세액공제 혜택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추후 경과를 살펴 특수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라도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외에 개정안에는 청년 고용증진을 위해 제시된 세제혜택의 종류가 10여개에 이르고 있음
 - 이중 사회보험료 공제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고용유지기업 세제지원의 연장은 모두 적절한 조치라 판단
 - 또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되는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 방안도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임
 -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 청년 채용 인건비의 최대 60% 정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관련 제도의 실효성 분석에 기초한 체계적인 제도 정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3) 금융투자 세제지원

- 세법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금융투자 활동을 통한 가계부문의 재산형성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
 -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비과세, 그리고 펀드 손익 환매 시 일괄과세 등은 모두 가계부문의 여유자금의 주식시장에 투자되기 용이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짐
 - 금리나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가계보유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어 자산증식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 가능
 - 동시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투자문화를 일신하여 침체된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제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포석으로 보임
 - 단, 기존 자산보유 행태에 인위적으로 변화를 주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유인을 통폐합하는 조치가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상이한 정책적 목적(취약계층 지원) 하에 주어졌던 세제유인(조합원 예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에 대한 비과세)을 철회하는 조치의 타당성

을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함

-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를 통해 가계가 편리하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상품에 분산된 세제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취지는 저금리 상황을 염두에 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그 동안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한 현행 재형저축 비과세·소득공제장기펀드 특례는 금년 말로 일몰 종료시키고, 이를 ISA로 대체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임
 -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수차례에 걸쳐 빈번하게 바꾸어 온 관행이 이번 세법개정안을 계기로 안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ISA의 신설은 현재의 금융환경에 비추어 적절한 방향으로 생각되나,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그리고 세제지원 대상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음
 - 이 정책의 목적이 금융투자의 활성화에 있다면 대상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처럼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이 목적이라면 지금처럼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소득수준의 제한이 필요할 것임
- ISA 장점
 - 일종의 개인운용 펀드로 투자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이익 9.9%의 세율 적용(vs 15.4%)
 - 연간 2000만원씩 의무납입기간 5년간 최대 1억원을 납입가능(15~29세 청년층이나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의무가입기간 3년)
 - 금융위에 따르면 ISA를 통한 절세효과는 28만~280여만원으로 추정
 - 소득에 상관없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누구든 ISA에 가입(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음)
 - 기존 세제 지원 상품의 경우 저소득층과 청년층만 혜택을 보았으나, 이제 중산층도 노후 대비를 위해 활용 가능

□ ISA 한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 절세효과가 크지 않고, 고위험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얻어야 세금감면액이 늘어나는 구조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의 활용도 떨어짐)
- ISA 계좌의 순이익을 계산할 때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나오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제외되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보다 안정적인 예금이나 적금으로 구성될 가능성 있음
- 보험 상품이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이며 의무 가입기간이 5년으로 길어 종합적인 자산관리에 한계

□ 결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국민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 적합도록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서민과 중산층을 정부가 앞장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로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가도 고민해야 할 것임
- 비과세 혜택이 적어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9.9%의 저율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 서민들의 활용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
- 개인연금, 퇴직연금, 재형저축, 소장펀드 등에 가입한 서민이나 중산층의 ISA 투자여력이 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서민과 중산층의 참여가 저조하여 고소득층과 자산가의 절세수단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신설하고 납입금 3,000만원까지 평가·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은 국내외 주식 투자수익 간 세부담 격차를 해소하여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

- 국내주식형 펀드의 매매 평가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처럼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
- 이는 국내펀드시장의 해외주식 비중을 높이게 함으로써 글로벌 분산투자의 이점을 통해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환매시 펀드손익 합산 일괄과세 또한 주식 평가차익의 변동성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중간에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4) 개별소비세제 운용방식 전환

-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의 일부 품목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기준금액을 현실화한다는 정부의 개정안은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방향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정부가 단순히 국내소비 진작의 차원보다는 외부불경제 보정이라는 더 큰 틀에서 개별소비세제 개편에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함
 - 소비가 보편화된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향수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했지만, 가구·사진기·시계·가방·보석 등은 사치품이라는 기존의 관념에 얽매어 과세 기준가격만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소비세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과세취지는 현재와 같이 소비지출 행위가 다변화된 상황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음
 - 따라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재화나 담배 및 술 같은 건강유해 품목 위주로 과세하는 방향의 개별소비세 재편이 바람직함(실제로 이번 개정안에는 사행산업과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 강화가 포함되어 있음)
- 소득수준의 증가로 국내외 시장에 다양한 품목의 고가상품이 등장하고 소비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기준으로 분류된 일부 품목만을 사치재로 규정하고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음
 - 훨씬 더 고가인 다른 상품(예를 들어, 의류나 여행상품 등)을 과세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20%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해 과세대상 품목의 거래가 음성화되어 개별소비

- 세 세수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세수마저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됨
-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가브랜드의 상품 개발을 막기보다는 더 발전시키는 것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사치품 명목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재화의 생산은 현재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과중한 세부담은 이들 기업의 경영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원에서 가구·사진기·시계·가방·보석 등의 소수 재화에 대해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이번에 함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공평과세와 세제합리화

-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공평과세나 세제합리화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다수의 과세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편법적 손금처리 방지: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과세전환: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종교소득 과세 도입
 - 세부담 수준과 세제 합리화: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사무관리직 직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등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 업무용으로 등록된 회사차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으나 성실납세 구현 측면에서 엄격히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일부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moral hazard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것이 방치되어 온 것은 세정당국의 책임만이 아니라 제도적 미비에도 원인이 있음
 - 정부가 개정안에서 비용처리의 조건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일지 작성, 로고부착 등의 요건 충족을 요구한 것은 편법적 행위를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함

- 다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도 여전히 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운행일지의 작성과 검증에 행정적 비용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기에, 추후 실효성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승용차 관련 비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실제로 이번 조치에는 비용인정 한도 연 600만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

□ 참고

- 업무용 차량을 신고한 법인은 전국에 45만 여개, 이들 가운데 화물차와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순수 업무용 승용차’만 신고한 법인이 15만~20만 개 정도로 정부는 추산
- 개인사업자 가운데 이 제도가 적용될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2013년 기준 7만여 명에 달함
- 나머지, 소규모 복식부기 작성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통해 받는 비용인정 금액은 연간 8조5,000억원(법인 4조2,000억원, 개인사업자 4조3000억원)
- 이들 업무용 승용차 중 상당수가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5,000억 원 이상 추가 세수확보를 기대

□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주주에게도 20%의 세율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다만, 2013년에도 유사한 개정이 있었으나 불과 2년 뒤에 예고 없이 과세대상을 다시 확대하는 방식의 세법개정은 세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

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세대상을 확대하기 보다는 주식양도 차익 전면과세를 목표로 한 단계적 확대 방안을 도입시점과 함께 사전에 정해두는 중장기적 접근이 더 바람직함

□ 종교소득 과세

- 기존에 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수차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논의 과정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반대로 인해 제대로 법제화되지 못했는데,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서는 차제에 과세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1968년 국세청의 종교인 근로소득세 부과 시도 무산 이후 47년간 비정상화)
-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상에서 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는 내년으로 미루어진 상태(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80% 필요경비 인정, 실효세율 4.4%)
-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종교소득을 신설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화 된 필요경비 체계를 적용한 것은 기존의 논의에서 진일보된 방안으로 평가됨
-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 심의과정이 또 다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건에 대한 조세소위의 논의를 공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단, 종교단체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 방식을 자진신고 포함 선택 방식으로 완화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 2008년 세법개정으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효과는 실질적으로 올해 이익금부터 반영되어 내년의 세수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음
- 최근 들어 법인세수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국세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기업에 한해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은 과거 결손금을 공제하는 방식에만 제약을 가하기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이를 평탄화(smoothing)하는 작용을 하게 됨
- 이 제도는 현재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90%), 독일(60%), 프랑스(50%), 이탈리아(80%)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축소

-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모두 연구개발비에 포함시켜 세액공제액을 산출하는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사무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관련하여 일정 수 이상의 석박사 연구원 고용을 요구하는 현재 세법상의 연구소 지정 요건은 벤처나 중소기업에게 비현실적인 면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대기업의 일반적인 R&D 증가율을 고려할 때 당기분 방식에 비해 증가분 방식이 월등히 유리한 방식이기에 증가분 방식의 공제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두 방식 간의 선택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세와 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

- 2013년 말 통과된 지방소득세 독립화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자율적으로 결정·경정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감면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과세자주권’을 획득
- 법통과 이후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세무조사를 남발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복 세무조사 금지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과표를 공유하고 과표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함
-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를 재개정하는 해프닝은 정부 내 정책조율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에 해당
- 추후 중요한 세법개정은 부처 간 협의는 물론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임

Ⅰ 참고문헌

기재부, 2015년 세법개정안 요약자료 및 내부 자료

통계청, 2015년 고용동향조사

전병목, 기업과세 및 투자지원 제도 합리화 방안, 조세재정연구원, 2015.7

회의록

○ **개회식 사회 세제분석과장 신항진**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님의 개회말씀이 있겠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201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일정상 참석은 하지 못하셨으나 서면으로나마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신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토론을 맡아주신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님,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김동건 교수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발제를 맡아주신 문창용 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내수도 안 좋고 또 수출도 부진한 상황에서 저성장 추세에 계속 직면해 있습니다. 세출측면에서 보면 계속 복지수요, 여러 수요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를 뒷받침하는 세수여건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매년 재정운용 건전성을 제고하고 또 지출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제와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매년 개최하는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특히 2015년도의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이 대내외 경제환경과 재정환경 여건에 부응하는지를 논의하고 개정내용의 타당성, 그리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의원님들과 여러 조세정책분야 전문가들과 해안을 모으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곳에 함께 자리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처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

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나라살림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토론자,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개회식 사회 세제분석과장 신항진**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분들과 발제자, 토론자들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김동건 교수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김동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주관하시는 정책토론회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제가 사회를 맡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화창한 날씨에 제가 여의도로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재정학을 강의하면서 강의할 때마다 세금 얘기를 강의할 때는 저는 항상 긴장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금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조세가 좋은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국가가 어떤 조세정책을 마련해야 되는가 하는 답은 이론적으로는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정서적인 문제에 걸리고 감성에 문제가 됩니다. 약간 부과해도 흥분하고 분노를 느끼는 것이 납세자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금문제를 다룰 때는 여간 조심스럽지 않고 다양한 시각을 다 검토하면서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이 정책적 시각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금에 대한 조세개정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정부에서 예산 짤 때 다 고려해서 합시다라는 항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이런 이론과 국민들의 감정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하

면서 토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오늘 국회의원 두 분도 계시고 정부와 국회에서 직접 이 문제를 정리하시는 최고 실무담당자도 오셨고, 세 분의 전문 토론가를 모시고 토론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플로어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중요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사회자로서 말씀드리면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두 분께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하는데 한 15분 정도, 두 분께서 30분 안에 발표를 마치시고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2015년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문창용 세제실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 **발제자 문창용**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세제실장 문창용입니다.

저는 오늘 ‘2015년 세법개정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금년 8월초에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서 소비가 급감하면서 2/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성장률이 0%대에 머무르는 등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추경 등 재정보강, 소비활력 대책 등에 따른 정책효과에 힘입어서 3/4분기 GDP는 전기 대비 1.2% 성장하는 등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정년연장에 따라서 청년들이 향후 3~4년동안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재정측면에서는 최근 3년간 세수실적이 예산을 하회하는 등 세수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정부는 저성장을 탈피하고 청년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어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 있는 세제”라는 비전 하에서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틀에서 마련된 금년 세법개정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세대인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서 청년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1인당 500만 원, 그리고 대기업은 250만 원의 세제지원을 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청년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에 대해서는 1.5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율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관광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의 문화접대비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해서 건전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 제고를 위해서 일정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환급 대신 사전면세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관의 수입을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 신고 시 정산하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전문펀드를 신설하고 1인당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해서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안

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 간 주식을 교환할 때 주식양도차익과세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처분 시까지 이연하고 또 증거거래세를 면제하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 자산양도차익을 업종제한 없이 과세이연하는 등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자발적 구조조정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업재편계획은 현재 산업통상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민생안정지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고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가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해서 5년 동안 매년 2000만 원 한도까지, 총 1억 원까지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위 ISA를 도입하였습니다.

또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최대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중소 벤처기업 근로자의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적용할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의 경우에는 5%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인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이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평과세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소득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위해서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 세율을 2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고용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경마, 슬롯머신 등 사탕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종료하며,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와 동일하게 저율 분리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중에서 정책효과가 미미해서 지원 필요성이 낮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제도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고철, 철스크랩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대상에 철스크랩을 포함하고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에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성실한 신고 납세유도를 위해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범위를 체납국세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에 거래가격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출정보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OECD에서 논의 중인 B/E/P/S를 법제화하는 초기단계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 또한 보완하였습니다.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국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과세기한 내에 받지 않고 확정신고기간까지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 공제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담 수준을 합리화 하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개별 예시규정 과세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 소위 일감 때워주기에 대해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수측면에서 이상의 금년 세법개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약 1조 900억

원의 세수증대효과가 기대됩니다.

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 500억 원이 증가하는 반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00억 원이 감소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세정책의 큰 틀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는 투자부진 등으로 90년대 이후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복지제도 확대로 사회보장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통일을 고려할 경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조세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여건을 감안해서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 있는 세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조세제도 합리화를 중장기 조세정책의 기본정책 방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투자와 고용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 세제를 구축해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소득간 형평성 제고,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 합리화를 통해서 과세형평성을 높이며,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서 세입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세제 및 국제조세체계의 정비,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조세체계를 합리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부담측면에서 현행 세제가 유지될 경우 국세수입은 연평균 4.3%씩 증가해서 2019년에는 255.6조 원이 될 전망입니다.

중기 조세부담률은 누진세 체계에도 불구하고 세수신장성 약화 등으로 해서 18%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2015년 세법개정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된 저의 발표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 김동건** 여러분 박수해 주시지요.

(일동 박수)

문 실장님께서 15분의 시간도 아주 절약해서 15분 안쪽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급공무원을 보면 시간개념에 철저하신 분들이 유능하신 공무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 실장님이 아주 유능하신 분으로 인상이 됩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또 공평과세 이 세 가지의 큰 기조 속에서 금년에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효과는 약 1조 900억 세수증대가 일어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은 18% 부근에 머물러서 큰 조세부담 상승도 없다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준비하신 세법개정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님께서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15분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 **발제자 박용주** 안녕하십니까? 경제분석실장 박용주입니다.

15분 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창용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력을 추구하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세제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세제실의 입장에 공감하고, 다만 마지막에 말씀하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라는 중장기 목표가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가, 올해까지 포함해서 4년 연속 성장이 없었으면 올해도 세금이 결손되는 것인데 사실상 4년 연속 결손을 보이는 상황에서 세수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없겠습니까만 그런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고요. 일단은 경제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큰 틀의 세제개편은 불가능하겠지만 그 틀 내에서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실장님께서서는 일단 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앞부분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목별로 주요한 개편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징적인 것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입니다. 이것은 설명하셨지만 그동안 예금 적금 펀드 증권이나 파생결합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계좌로 운영한 다음 이자배당소득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사업자나 사업소득자가 5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있었는데 이것을 확대하는, 그전에는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했지만 이것은 전 근로자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이고요, 연간 최대액만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ISA에서 발생한 소득이 200만 원까지를 비과세하고 200만 원 추가분은 지금 이자배당소득의 14%인데 이것을 9%로 저율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더해서 15세나 29세 청년들한테는 5년의 의무기간을 3년 의무기간으로 낮춰주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경제여건 하에서 개인의 저축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밑의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가계는 통상 저수익의 예금 및 현금 쪽에다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측이고 영국도 그런 측입니다. 영국이 99년도, 일본은 14년도에 도입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그런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다만 동 취지가 신규저축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인데 과연 신규저축 확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ISA로 인한 세후 수익률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발생소득 대비 연간 한 1.5% 수준이 절감되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기존 금융자산 간에 수익창출을 위한 이동일 경우에는 신규적인 저축확대가 과연 클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 되고 있고요.

또 제도 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 가입자 및 계좌유지를 장려할 방안도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형저축이 일몰예정인데 이것에 비해서 근로자에 유리한지 등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최근 내수도 낮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처분소득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가구

의 비중이 5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가처분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가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축률을 늘린다는 것은 과거 우리가 40%, 20%대 저축률이 지금은 단위의 저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도입입니다.

신규 투자하는 해외주식펀드의 경우 1인당 3000만 원까지 10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방안입니다. 과거에 한 번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외환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환율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개인투자를 활성화시켜서 환율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을 했는데 당시에 좋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2007년도에 도입했었는데 대미환율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고 개인계좌 639만 건에 손실금액이 한 16조에 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대외경제여건이 옛날하고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고 12월에 금리 인상한다는 것이 많이 얘기되고 있고 최근 5개월 동안 원화 가치가 5% 정도 하락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위안화 평가절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잘못하면 크게 효력 없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또한 국내투자 활성화되는 데는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 외국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주식투자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더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상장주식 금융소득 과세강화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학계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증권 과세대상을 확대해 가지고 현행 지분율 2% 이상 또는 지분액 50억 원 이상을 개정안에서는 1% 또는 25억 원으로 바꿨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정안에서는 바꿨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형평성 차원에서 말이 있었던 중소기업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현행 10%에서 20%로 올렸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상 다른 나라 선진국 사례를 감안한다든지 아니면 과세인원이 연간 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투자자의 0.07%여서 과세대상도 적기 때문에 이것은 적 절하고, 향후에 대상범위의 고민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 지 않을까 라는 생각됩니다.

다음은 법인세 부문입니다.

법인세에서 이번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청년고용증대세제의 도입입니다. 청년고용증대세제의 도입은 앞으로 3년 동안 정규직 청년고용 증가 시에 1인당 대기 업은 250만 원, 중소기업은 500만 원이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최근 청년 고용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작년 올해 사이에는 잠깐 좋아졌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전체 고용율과 청년 고용율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청년 고용율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 회보험료 세액공제라든지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라든지 고용유지 중소기 업에 대한 과세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 일몰이 연장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라 든지 근로소득증대세제 이런 것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물론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 고용증대특별세제증대를 실시했던 2004년 도, 2005년도 양 연도에 보면 조세지출을 한 1000억 원 정도를 조치했는데 경기침 체 영향으로 취업자 수는 오히려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실시했던 2010년과 2011년 6월도 보시면 11년도 경기둔화로 인해서 취업자 증가율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결과적으로 취업률 증가라고 하는 것은 경기와 연동되기 때문에 경기상 황과 동행하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액 가지고서는 한계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법인세 관련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합리화입니다.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되어 왔던 거지요. 2억 원 이상 고가수입차의 법인가매가 87% 정도 되고 있고, 전체 등록차량의 80%인 1500만 대가 법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인차량들이 과도하게 사적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서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 지 비용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임직원 전용차량 보험가입이라든지 로고를 부 착한다든지 차량운행일지를 적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등 적용하겠다는 말씀

이고,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한 법안이 5개 정도 있는데 과연 차량가액을 무조건 놔주는 것이 좋을 것이냐, 차량가액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배기량도 그렇지 않느냐, 또 업무주행비율 같은 것도 관련성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가지고 같이 기재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비용인정요건도 로고부착이나 단순한 일회성 기준에 따라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번호판을 법인번호판을 빨간색이라든지 만든다면 오히려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소비세 부문입니다.

소비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매입자납부방식으로 몇몇 특히나 자원재생산업에 있어서 매입자납부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금지금거래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금 관련 모든 거래가 스크랩들, 고철 스크랩이라든지 동스크랩, 금스크랩이 확대되고 있고 이번에 철스크랩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수 탈루방지를 위한 세원 투명성 확보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협력비용, 납세순응비용 같은 것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 가지 고철, 여러 가지 같이 한꺼번에 취급하고 다른 것까지 취급하는 분들이 계리를 따로따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대부분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한다든지 대부분 어음거래를 하는데 어음거래에 따른 어음대금의 지급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하는데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기준가격, 세율조정인데 개별소비세는 과세대상을 줄이고 기준가격도 높이고 세율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이라든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서 일부 품목인 보석 및 귀금속, 시계 같은 것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 상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동안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이 2001년도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한 후에 여태까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대용량 가전제품의 과세폐지가 그동안 과연 2013년도에 이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과세 제외대상이 됐기 때문에 세수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경마장 장외발매소라든지 경륜 경정 같은 데에 개별소비세를 인상한 것에 따르는…… 요새 경마장 장외발매소 같은 것들이 대부분 주택가에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sin tax 성격에서 올린다고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내년의 세수효과, 향후 5년 동안의 세수효과를 보시면 3.9조 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 0.4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전망하고 있기는 향후 5년간 5.7조 원, 16년도에는 0.6조 원 정도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강화가 한 1.9조 원 정도 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가 0.5조 원이고요. 감소요인으로는 ISA 도입이 -1.6조 원, 해외주식펀드 면세가 -0.8조 원, 그다음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이 -0.5조 원 해서 일단 순증은 저희가 보기에 3.9조 원, 2016년도에 0.4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정부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일몰도래 정비규모가 올해 88개 항목에 일몰이 도래합니다. 조세특례가 88개가 도래하는데 이 중에서 27개만 정비되었다, 정비액 기준으로 볼 때는 전체 감면액 대비 0.5조 원만 정비가 됐다는 것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비율이 12.6%가 되고 항목수로는 30%가 되지만 정비액 기준으로는 정비율이 12%밖에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수효과가 만약 88개 조세지출항목이 전부 다 일몰이 도래한 다음에 그것을 카운트해 가지고 향후 세수효과를 본 것하고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일몰 연장되는 항목으로 인한 감세효과가 11조 원이 됩니다. 11조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할 경우에는 세법개정안 세수효과는 3.9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몰이 도래한 지출항목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비가 좀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처하고 정부하고 세수효과 비교는 표를 보시면 되겠지만 예전처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큰 차이가 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큰 차이가 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1조 7000억 정도 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상당히 세수효과에 대해서 현실화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경제여건상 시의적절하나 다만 정책의 실효성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세제에 있어서는 정책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것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확충이 미흡하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같은 것이 미흡해 가지고 예년 대비 세수효과가 부진합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 동안 세수효과가 1조 800억인데 최근 3년 매년 낼 때마다 평균 세수효과는 2조 2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밖에 안 된다. 최근처럼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재정수요가 많고 세수는 안 걷히는 상황에서 좀 아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 세입확충방안이 필요한데 최근 4년 동안 말씀드린 대로 세수가 부족했고, 국가채무는 내년부터 40%가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조세부담률을 17%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17%대의 조세부담률이라는 것은 경제성장이 높았고 복지비중이 낮았던 2000년대 초반의 세 부담 수준인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나라 GDP 대비 재정수요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감소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지난번 세액공제를 바꾸면서 근소세 면세자비율이 상당부분 올라갔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정세목의 접근, 세금을 인상하는데 있어 가지고 특정세목으로 접근하다 보면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틀에서 우리나라 세제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경제환경에 맞는 세제개편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세목에 맞추지 말고 여러 가지 세목을 종합적인 세제개편 패키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김동건 고맙습니다.

박수로……

(일동 박수)

시간 아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세제실장님께서서는 큰 기조, 예컨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이런 큰 기조 속에서 중요한 세법개정 내용을 설명주셨는가 하면 박용주 실장님께서서는 그것을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별로 해서 한 일곱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설명하셨고.

세제실에서는 이번에 세법개정으로 1년에 1조 이상의 세수확대효과가 생기니까 한 5년에 걸쳐서는 5조 이상의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예산정책처에서는 그것보다는 한 1조 정도 낮게 5년 전체를 보면 한 1조 7000억 정도 해서 한 4조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양 기관 다 이번에 세법개정으로 세수효과의 증대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정책처는 아무래도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판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이라든가 세수 확충의 미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지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분위기상 그렇게 하셨겠지만 좋은 얘기는 나중에 나오시겠지요.

아무튼 두 기관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홍종학 의원님께서 조금 늦게라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의 홍 의원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지요.

(일동 박수)

저희들이 진행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스케줄에 보면 5분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은 각 분마다 8분씩 주어져 있는데 홍 의원님 조금 더 쓰셔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8분의 시간제약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자 홍종학 감사합니다.

제가 내용이 많아서 혹시 길어지면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서는 낙수효과의 기대하는, 그래서 재벌이 잘 살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런 얘기고, 재벌이 잘 돌아가야 경제가 좋아진다. 저희는 중산층 서민의 소득이 없어서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중산층 서민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큰 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재벌과 슈퍼부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인데 반면 아까 철학적 차이에 의해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상 재벌과 슈퍼부자를 지원하는 세제로 지난 3년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 지원 우선,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재정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서 100조 원, 98조 8000억 원 재정적자를 냈고 박근혜정부에서 최소한 167조 이상 재정적자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는 부족하지요. 세수확보를 위해서 서민쥐어짜기로 그동안 일관해왔고, 담배세라든가 심지어는 연말정산문제가 대두됐는데 연말정산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그것이 대란이 됨에 따라서 오히려 세수에 커다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실은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서민경제는 피폐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책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경제의 고용불안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양극화에 의해서 노동시장이 피폐화되고 있고, 그래서 1년에 임금근로자가 1820만 명인데 그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1160만 명입니다. 그런데 1년에 퇴사하는 사람이 560만 명, 48%이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660만 명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1220만 명, 약 70%의 인원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용불안에 시달리다 보니까 임금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못하고, 오늘도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대부분 200만 원도 채 못 받고 있다는 얘가지요. 3년이 안 되어서 퇴사하는 사람이 560만 명 중에 493만 명 따라서 이 분들은 기술을 습득할 기회조차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는 철저하게 피폐

화 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고용시장을 유연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한국경제를 더 피폐화시키고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30대 그룹은 710조에 달하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내부에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일부 재벌들은 7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재벌들은 역시 또 부실화되어 있습니다. 재벌 계열사 5개 중에 하나는 좀비기업이라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잘못된 경제운용으로 대단히 잘못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에 대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해서 막대한 비과세감면을 해 주고 있고, 무려 전체 비과세감면의 56.9%를 재벌들이 가져갑니다.

종합소득 1900만 명, 우리나라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사람들 전체 1900만 명을 다 분석해 봤더니 월 소득이 한 달에 160만 원을 못 받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16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한국 중산 서민층의 생활은 그야말로 피폐해 졌고 도저히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소비가 안 되니까요.

종합소득 백분위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위 1%가 16배, 17배 이런 정도로 상당히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세법개정안 저희가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관영 의원이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그다음에 지정기부금 납부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안을 내놓고 있고요. 통신비 특별세액공제, 자영업자에게도 의료비 교육비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것을 부여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경비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 스스로 의료비 교육비는 경비성이 아니다, 지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은 자영업자도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을 지원한다든가 일자리를 지원한다든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입니다.

법인세법의 경우에 법인세 감세철회, 재벌에 대해서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는 저희의 당론입니다.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박영선 의원의 안,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 임금인상할 때 세액공제해 주는 안, 벤처기업지원안, 그다음에 접대비 실명제를 위한 제가 낸 안입니다. 그다음에 사내유보금과세에 대한 최재성이 인영 안, 현재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거의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진짜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2개의 안을 저희가 내놓고 있는데 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의원안이 소득금액 5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안이 있고, 윤호중 의원안은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신규채용 시에 1000만 원 지급하는 일자리 창출 세제안이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감면지원하는 박광온 의원안이 있고, 그다음에 최재성 의원안이 재벌의 최저한세를 높이는 안, 장병완 의원은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지원 강화하는 안, 김관영 의원은 청년층까지 근로장려세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안을 저희가 내놓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제혜택—박광온 의원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최저혜택 주는 것—윤호중 의원안, 매입임대 및 준공 후 임대해서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김현미 의원안,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설훈 의원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정식 의원안, 협동조합에 대해서 과세혜택을 주자는 전순옥 의원안, 모두 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노동자와 세입자, 그리고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안입니다. 정부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카드매출 세액에 대해서 우대공제율 한도를 확대하는 윤호중 의원안,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점 상향하는 장병완 의원안, 의제매입공제한도 폐지하는 장병완·김영록 의원안, 중고품 공급에 대해서 마진과세 도입하는 이용섭 의원안, 수의사 진료행위 지원하는 윤호중 의원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내놓고 있는 안입니다.

상속증여세법 중에서 박영선 의원이 편법상속을 막기 위한 안을 내놓고 있고, 제가 면세점에 재벌특혜를 억제하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관영·윤호중 의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맥주, 우리나라 맥주시장의 독과점을 막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 역시 지금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이 면세점이라든가 주세법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기업은 100% 일본기업인 롯데 호텔과 100% 벨기에기업인 오비맥주만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을 억제하고 대신에 외국기업에다 혜택을 주는 이런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미 의원안은 신용카드 납부국세에 대해서 정부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이런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안은 이렇게 반대로 가는, 개별소비세 과세는 오히려 높여서 부자들에게는 지원을 자꾸 늘려주고 담배세로 판명된 것은 결국 세수확보만을 위한 것이었다, 결국 이것은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됐고, 이런 것들이 서민들은 소비여력이 줄어들어서 경제를 억제하는, 담배세로 인한 개별소비세는 2조 원 이상이 늘어나고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주로 이런 것이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청년고용증대세제라고 하는데 윤호중 의원안이 이미 작년도에 내놓았는데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내놓았는데 중소기업 500만 원으로 줄여놓고 그리고 재벌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재벌들에 대해서는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서 강제해야 될 대상이지 재벌들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재벌들이 청년고용할당제 이상을 고용한다고 한다면 저희도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청년고용증대세도 재벌 감세정책으로 전락했고,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재벌을 지원하는 세제입니다. 이것 효과도 없을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고용분에 대해서 청년할당제를 먼저 집행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대용량 가전제품, 앞에서 예산정책처에서도 말씀했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데 이런 것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고,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상향은 역시 슈퍼부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 소비할 여력이 없는데 이런 비싼 물건들, 특히 대개 외국물건들인데 이런 것들을 누가 사겠습니까?

해외주식투자 비과세펀드 이것은 제가 주장해왔던 일입니다. 세계화시대에 해외 투자 확대가 필요한 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환헷지를 하지 않는 경우만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헷지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얘기하는 외환관리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헷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것을 대상으로 하면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지원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용세액공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정규직 전환 임금증가분 세액공제, 시설투자 이것은 재별지원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많은 게 있는데 구조조정과 관계없는 기업들까지 다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것은 재별들에 대한 지원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 금융기관 돕자고 하는 것이 지금 금융기관들이 어렵거든요. 증권회사, 그다음에 보험회사 이런 것 돕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국민들 돕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것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강화하자고 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막대한 희생을 해 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했습니다. 그 돈을 아껴가지고 재별 금융회사 도와줍니까?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의 금융기관 지원은 잘못된 것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비과세종합저축, 2014년도 장기주택마련 비과세, 주택청약저축 이렇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정부가 얘기하는 ISA 과세특례대상으로 되시는 분들이 바로 앞에서 이 혜택을 받은 분들이 또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서민들은 예금할 여력이 없습니다. 빚을 얻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 즉 부자들은 계속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중 삼중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저희는 준공공임대는 임대료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입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찬성

한다고 했고, 준공공임대를 확대하라고 저희는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준공공임대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와 투기꾼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것 절대 안 합니다. 세입자를 위한 정책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건설회사만을 위한 막대한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따라서 업무관련성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사행산업 당첨금 과세기준 강화했는데 이런 것 얼핏 보면 괜찮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장외경마장의 개별소비세 인상하자, 지금 용산에 장외경마장 만들어서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자는데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정책은 사행산업을 줄이는 정책이 아닙니다. 사행산업은 하되 거기에 대해서 200배 이상, 100배 이상 혹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니까 세수확보 목적이 더 크다. 지금 서민들이 사행산업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조세감면제도 이런 것들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세소위에서 얘기했는데 정부는 일관되게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이일드펀드라든가 이런 것들 금융기관 지원하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이런 것들은 일몰 종료하는 것은 저희가 종료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 되지요 않는데 이런 것들을 꼭 반대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 **사회 김동건** 의원님 15분 이상 쓰셨으니까 이제 끝내시지요.

○ **토론자 홍종학** 예, 끝내겠습니다.

작년에 3대 개혁방안 얘기했는데 이것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소위는 전면 공개되어야 됩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세제개편안에 납세자 영향평가 제출은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은 간소화되어야 되고 비과세감면은 축소되어야 됩니다. 정부의 전반적인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김동건** 감사합니다.

홍 의원님의 좋은 말씀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지요.

(일동 박수)

제가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홍 의원님 말씀의 포인트는 금년에 세법개정이 주로 특수 대기업 재벌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것이 말씀의 큰 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되고, 좋은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그러면 강 의원님이 아직도 안 오셔서 오시면 말씀듣기로 하고 이어서 전문가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아 있는 순서대로 성명재 홍익대 교수님 말씀 듣고, 교수님들께서는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토론자 성명재**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성명재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평가한다면 무제감 측면에서는 개편의 범위는 소폭이었다고 말씀드리고, 개편의 성격 내지는 성질로 봐서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fine tuning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무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편이었다고 평가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제개편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지만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조적인 개편문제에 대한 내용이 축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멘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금년도 개편은 아니고 작년도에 개편된 부분인데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배세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소비활성화를 하겠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비용처리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조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먼저 소비활성화를 위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장동력이, 성장엔진이 식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개별소비세를 완화한 것을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겠느냐 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그 개편을 통해서 침체되어 있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히 식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덥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불씨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 한도를 두자는 말씀이 있는데 일견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이 이것이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다고만 하지 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WTO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하게 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제품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관행이나를 판정하는데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비차별적 접근과 내국민 대우원칙, 이 두 가지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라도 위배된다면 통상마찰을 통해서 아마 WTO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거의 패소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가격 한도를 두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 수입차가 월등한 비중으로 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차 가격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내국민 대우라고는 하지만 비차별적인 시장접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마 여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잊혀져서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1990년 초까지만 해도 가격이 700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배로 중과세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폐지가 됐는데 이것이 당시에 보면 70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100%

수입자동차였거든요. 물론 가격한도를 둔다고 했을 때 지금은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도 고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마는 비중측면에서는 월등히 수입자동차가 많이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여건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물론 이것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자영자에 대한 사업소득, 과표양성화를 위해서 주어진 부분이고 한시적 예외적으로 도입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축소해 가지고 하다가 결국 없애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이 부분이 확대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담배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재로 친다고 하면 내구소비재 성격과 많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내구소비재의 특성이라는 것은 당장의 가격수준도 중요하지만 이 내구소비재를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하면서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포함해서 현재 시점에서 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담배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격수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담배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이 현재 금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담배 흡연을 억제하는 국가, 선진국에서는 다 억제한다고 하는데 특징중의 하나가 지금도 담배에 대한 세율과 가격이 높지만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연하자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담배소비세가 도입됐을 때 2000원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충격적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비싸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싸게 될 수 있으니까 계속 피겠다는 의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세금을 올리는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성이 더 큰 것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계속 연간 2000원씩 올린다고 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을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담배 한 갑이 10만 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계속 흡연하게 되는 경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향후 구조적인 측면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라고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복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을 경우 눈에 보이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복지는 현재 부족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듯이 세금도 그런 측면에서 조심해야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100원을 얻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200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200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손실입니다. 눈에 100원을 얻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가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제측면에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출산 고령화라는 제한요건을 고려해 봤을 때 향후 우리나라의 세입여건은 굉장히 밝지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본다고 하면 보편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율이 넓고 지속가능한 성장, 지속가능한 재정,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보편과세가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역진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보편적인 관세를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두 번째는 지출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증세한 다음에 지출할 때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커버하고 남을 정도로 적절하게 플러스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고, 반대로 면세범위가 넓습니다. 구조적으로 면세범위를 대폭 축소하면서 세율을 올릴 수 있는 준비를 현재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하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김동건 감사합니다.

박수로 성 교수님 말씀……

(일동 박수)

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반복할 이유가 없고 여러분 잘 들었을 줄 믿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

이어서 김유찬 홍익대 교수님, 같은 대학에서 과가 다르다마는 김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 **토론자 김유찬** 제가 준비한 자료가 페이지 수가 많은 것 같은데 건너뛰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공평과세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존의 비과세감면을 연장하면서 또 새로운 비과세감면이 도입되고, 이런 비과세감면의 수혜자가 대체로 소득 상위계층이거나 대기업이거나 해서 공평과세가 오히려 해쳐지는 세제개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우선 개별 세법개정안 내용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자료로 갈음하면서 건너뛰고, 먼저 두 가지 정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도입,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따가 뒤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더 건너가서 우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지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것이 결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혜택이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주복지 차원에서 하는 제도인데 실제로 이러한 혜택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이런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과연 임대주택 고급활성화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대사업자가 이러한 세제혜택을 근거로 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인 전망에서 긍정적인 전망으로 바꿀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은 그 사람들에게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만 작용할 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들고, 사실은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수재 성격을 가진 주택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급 및 수요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격차가 작아도 가격변동이 굉장히 심한 것은 이미 노정되어 있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2017년부터 임대소득 과세를 하

겠다는 생각을 정부가 표명했고, 저는 이것을 지금 당장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사실은 지금 큰 주택시장의 혼란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전세공급이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를 안 하더라도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를 바로 시행함으로써, 2016년에 한다고 지금 발표하면 그 효과가 당장 나올 수 있겠지요.

전세의 월세전환을 저지하는 효과가 생김으로 해서 전세 공급이 늘고, 월세공급이 줄어들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사용하지 않고 효과가 애매한 혹은 불확실한 정책수단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음식업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한도가 사실 음식업종이 식료품에 대한 구매비율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한도를 자꾸 높이는 것이 결국 어떤 부가가치세 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지원책이라고 생각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혹은 이런 세제개편안을 세제실이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이 어떤 여당 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적절치 않은 내용이고 추진되어서는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에 관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고, 기업로고 부착하고, 이 정도 하면 100%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규정인데 실제로 도입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빠져 나가는 구멍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제한이라는 것이 같이 규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

앞에 토론자께서 이것이 WTO 규정하고 저촉될 수 있겠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한 주 전 정도 이 국회에서 다른 토론회가 있었고 새누리당의 통상전문가인 김종훈 의원이 그것을 주관하셨는데 거기에 나온 통상전문가 분들은 대체로 이것은 국내 자동차회사가 제공하는 국가승용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로 WTO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많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업무용 차량의 비용제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문제는 사실 납세자에게 상당히 과도한 납세협력비용

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국세청이 그 사실여부를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일괄적인 적절한 수준의 비용을 인정해주고 납세자가 그 이상의 비율로 비용을 인정받고 싶다면 그것을 입증할 납세자가 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인데 정부가 이것을 중소기업에 대해서 10%하던 단위세율 과세를 20%로 하겠다는 정도, 그리고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분야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분야로 지적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정부가 내세운 안은 굉장히 약한, 또 중요한 내용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대기업 주식의 세율은 역시 20%로 그냥 기존 세율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핵심이지요. 이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수고해서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배당이라는 것은 사실 상위 1%에 속하는 소득계층이 72%를 소유한 종류의 소득이고, 배당이익이 그렇다면 당연히 주식양도차익의 귀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의 사람들이 대부분을 가져가는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20% 세율을 해 준다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체계하고 큰 괴리가 있어서 사실은 부동산 양도차익이 소득계층 간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훨씬 주식양도차익보다는 더 넓게 퍼져 있는 것인데 그것은 종합세율로 분리과세하지만 세율체계는 또같이 그것하고 같이 가면서 주식양도차익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고 경제적 근거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면서 조세제도의 체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문제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주식전용펀드에 대한 과세제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ISA와 관련된 얘기이기도 한 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굉장히 저율과세, 특혜과세를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자본이 필요하다, 자본이라는 것이 어떤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이것이 일 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큰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런 믿음이 과연 옳은 믿음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본의 이동성이 과연 그렇게 강한가, 그리고 자본의 이동에 과연 세금이라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들이 굉장히 다르고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체계라고 할까요, 조세조약체계에 의해서 어떤 투자된 자본이 어떤 나라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더라도 이것이 투자소득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다시 낮은 세율로 과세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즉 외국세액공제제도를 통해서 다 상쇄해 버리는 기제가 국제조세 체계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제시한 표1에 보면 외국세액공제제도 내용인데 한미조세조약이 예를 들어서 배당, 이자, 그리고 사용료소득,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소득을 제가 여기 표에 담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외국인투자가 들어와서 자기나라로 이익을 다시 되돌려 가져가는 방법은 이 네 가지 통로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각각의 통로를 보면 전부 다 원천지급,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로 조세조약의 한계가 정해져 있고 그 이상 가는 것은 본국에서도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낮춰준다는 것이 외국자본을 유인할 어떤 체계적인, 국제적인 조세체계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잘 아시다시피 외국자본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회가 있었고 금융자산의 해외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세계개편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해외주식전용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결국 우리나라 국내 저축이 너무 많이 형성되고 있고 외국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본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제도가 되는 것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기금이 얼마나 크게 우리나라에 있고, 기업이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연금체계가 불안하고 개인차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떤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저축이 너무 많은데 개인차원에서는 저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본의 해외투자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다면 기존에 존재하는 해외자본을 국내로 끌어 들여오기 위해서 그리고 국내자본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공했던 그 수많은 자본에 대한 저율과세, 특혜과세 체계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일단 순서를 그것을 먼저 없애고 그다음에 해외자본에 대한 지원이 새로 도입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그다음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는 정책목표가 사라진 어떤 특혜제도가 계속 존재하면서 그쪽으로 의미가 없는 세제지원이 계속 되면서 국가재정이 잠식되는 결과를 방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 사회 김동건 한 가지만 더 말씀하시고 그치시지요.

○ 토론자 김유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드릴 것은 개인소득세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국세청에서 제공된 소득 백분위 자료를 가공해서 소득10분위 자료를 보면 소득8분위하고 소득9분위에 경계되는 소득이 근로소득을 봐도 그렇고 통합소득을 봐도 그렇고 5000만 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득6분위·7분위·8분위 정도 되면 상대적으로는 상위 소득 계층인데 그 사람들 소득이 50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결국 우리가 소득세 관련 정책을 국가가 어떻게 가꿔가야 될 것인가? 즉 6분위·7분위·8분위 되는 사람들이 순서적으로는 상위계층인데 소득의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라는 거지요, 5000만 원 이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면세점 이하 납세자 비율이 너무 높으니 그것을 줄여야 된다고 보면 사실 그쪽 6분위·7분위·8분위 당연히 그리고 5분위·4분위까지도 세금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 그쪽 분위 사람들이 절대적인 수준은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상대적 수준을 중요한 기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소득의 절대적 수준을 판단의 기준으로 할 것인가 두 가지 사이에서 정해야 되고요.

만약 소득의 상대적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면 소득4분위 이상 계층에 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ISA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존재했던 재형저축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다 혜택은 상위 계층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절대적인 수준이 중요하다면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대신 면세점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저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 주는 두 가지는 계속 충돌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또 ISA는 실은 6·7·8의 문제가 아니라 9분위, 10분위 되는 소득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8분위, 9분위 소득기준이 결국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인데 ISA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의 큰 혜택은 결국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매년 20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9분위, 10분위 사람 아니고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제도의 도입은 적절치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말씀 너무 길었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 김동건 여러분 박수로……

(일동 박수)

교수님이라서 세 분 다 그렇습시다마는 토론준비를 잘해 오셨고, 그것에 대한 충실한 설명을 하시려면 8분, 10분 가지고는 어렵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하시고.

김유찬 교수님 말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시간에 유념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토론자 김우철 안녕하세요, 김우철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많이 피로하실 텐데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서면으로 제출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법개정안 토론을 디테일을 볼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면을 먼저 봐야겠지요. 지금 정책환경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조세정책 환경은 한편으로는 경제활성화를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상반되는 두 목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결국 선택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정부의 선택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보다는 단기적인 경제활성화에 치우쳐 졌습니다. 그것이 이번 세법개정안의 본질적인 면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우선시 해서 세수확충은 매우 소극적이다,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연간 기준 1조 원 정도 세수가 늘어난다고 정부는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세수규모를 볼 때 이것은 대단히 작은 비율입니다, 0.4% 정도 되나요, 0.5%도 안 되는 비율이지요. 이 정도의 세수는 가만 놔둬도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전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늘었다고 하기에는 일단 유효한 범위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경제가 안 좋다고 보고 있고, 세수를 확충하기에는 좋은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거지요.

연말정산 파동이 있었고, 담배세 인상, 또 힘든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년엔 총선이 있네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말썽이 될 수 있는 증세카드를 이번에 넣는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리스크가 크겠지요.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표방하면서 세수확충문제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빠졌습니다.

세제실장님이 맨 끝에 중장기 세제정책방향을 제시했지요. 거기 보면 딱 한 줄 밖에는 없습니다.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세수확대가 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지만 두 번째 보여주신 표를 보시면 조세부담률이 19년까지도 18%입니다. 그러니까 0.1% 정도 들었다 났다 정부로서는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한 거지요, 세수확충과 관련해서는. 이 점이 이번 세법개정안의 과제이자 숙제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정부 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세원확충이 필요하다, 세수확충이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약가계부 사라졌지만 134조 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조달한다고 했지만 지금 임기 중간이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내년, 후년까지의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고려하면 누적규모가 167조 원까지 가 있어요. 134조 원을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서 잘 조달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결과는 160조보다도 늘 것 같은데 전액을 국가부채로 한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책임, 또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심각히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기도 없고 신뢰도 약한 야당이 이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도 그 문제를 제보하면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큼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대통령의 레이저가 너무 강해서 증세 없는 복지를 하기로 했는데…… 뭐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이 길어졌는데 좀 디테일한 점으로 들어가면 이번 세제에서 보면 예년과 달리 법인부분, 대기업부분은 세부담 변화가 완화되고 사실 빠졌습니다. 특히 아주 소득규모가 큰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위 말하는 재벌기업의 경우 낮은 실효세율을 올리기로 했는데 정부가 0.1% 정도 오른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고 이것은 아마도 이번 정부가 지나면 증세 논의가 활성화되겠지만 그때 어떻게 이 실효세율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정책방안은 고용중심의 세제지원을 강조한 면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투자중심의 세제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조금씩 노력했지만 이번에 대폭 고용중심의 세제지원이 왔고 이것은 결국 제조업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 등의 고용효과를 더 올리도록 하겠다.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중소기업 세제지원, 특히 고용지원의 제도활용률은 그동안 운용해 본 결과 높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고용관련 조세특례규모를 작년에 정부가 그래도 한 1000억 원은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성적표를 보면 400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38% 정도의 활용률밖에 안 나오는 점, 또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부가 한 700억 정도 조세 감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실제로는 36억 원, 그래서 4.8%밖에 안 되는. 거의 만들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소득세 감면비율을 50%에서 정부가 70%로 올리겠다고 해서 여러 개 고용지원세제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실효성을 어떻게 계속 높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업자한테 주는 것보다 기업한테 주자, 특히 중소기업한테 주자 해서 500만 원까지 주는 세액공제 방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취업자한테 주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중소기업의 임금이 너무 낮아서 청년들이 회피하고 있는데 그 낮은 임금에 과연 500만 원을 올려주는 조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 제도도 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은 적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세액감면제도가 여전히 효과를 발휘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보조금을 줘서라도 효과를 봐야 한다면 그것도 대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고용중심 지원방안의 방향은 맞지만 너무 개수가 많습니다, 중소기업만 해도 세제지원 개수가. 그래서 현금보조금까지 치면 연봉의 60%까지도 정부재정 세제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지. 너무 많은 제도로 인한 과다 또는 중복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제도 만든지는 얼마 안 됐지만 모아놓고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용 말고 두 번째 특징은 금융산업에 대한 지원이 눈에 보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가계에다 소득세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 방향이 저금리시대를 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금보유율이 너무 높은 금융상품 투자비중이 너무 낮은 우리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를 바꾸기는 해야 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과연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로 가뜩이나 저축률이 너무 없는 가계를 대상으로 금융산업으로 가자고 외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방향에 대해서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도 있지만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이라고 하지만 ISA 같은 경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현재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게 넘어가면 9.9% 저율과세인데 이 세제지원 혜택을 보려면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해서 아주 높은 소득을 올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공제 위주로 갔기 때문에 제법 절세효과가 있는데 이 ISA를 통해서 가계가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리려면 위험성이 높은 투자로 가야 됩니다. 매년 2000만원씩 5년 동안 1억까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종에 개인형 종합펀드인데 그러면 주식투자 경험이 별로 없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상대로 정부가 책임지지도 못할 주식투자 위주의 리스크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과하지 않나. 지금 우리가 물론 환율관리 때문에 또 보통 주식의 수익률을 높이려면 국내주식만 섞어가지고는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가 없지요. 당연히 해외시장으로 가서 모든 국가에 주식을 적절히 섞어서 믹스해 가지고 위험도 낮추고 수익을 유지하는, 전통적인 기법입니다마는 그것을 등을 떠밀면서까지 우리가 3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다만 관심이 조금 적어서 논란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현재처럼 세수확보나 세입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환율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껏 투자해 봐야 높은 수익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의 특성상 emerging market 위주로 고수익률을 보고 가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정부 말대로 비과세혜택 따라서 브라질에, 중국에 투자했는데 다 날렸다. 나중에 어떻게 원성을 들을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1분만 주시면.....

업무용 승용차는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서 정부가 늦었지만 탄력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봅니다만 생각할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나온 방안은 다소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은 충분치 못한 상황입니다.

업무용 일지를 쓰라는 것은 이미 업무용 차량을 잘 유지하는 기업한테는 불행이고 그것은 엄청난 행정비용이고, 개인사업자나 유사 개인사업자같은 법인, 이것을 잘 속이는 분들한테는 사적 이용을 너무 많이 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런 행정비용을 낮추고 사적 이용을 과감하게 막으려면 결국 비용한도도입이 필요하다.

사실은 제가 자세히 정부 발표자료를 봤더니 특정한 경우에는 연 비용한도가 600만 원까지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은 아니지만. 정부가 FTA 얘기하면서 어렵다고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한 것도 좋은데 이것이 2013년에 이런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정부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계획을 밝혀서 전면과세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을 밝히고 너무 재량으로 하지 말고 세제 안정성을 유지하자고 하고 싶고.

종교소득 과세는 아마 이번에 정부가 조심스러워 하지만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꼭 하시기 바라고, 원천징수 대신 자진신고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천신고만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언론보도 모음

"청년고용증대세제, 비과세ISA 등 실효성 제한적"

입력시간 | 2015.10.30 10:53 | 하지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일시적 보조금 성격 세제지원 효과 제한적, 해외주식펀드 비과세 실효성 미미

비과세ISA·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형평성 제고방안 모색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본 방향은 적절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일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 등으로 예년 대비 세수효과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30일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투자펀드 비과세 등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2015~2017년동안 정규직 청년고용 증가시 1인당 250만원(중견·중소기업 5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박 실장은 일시적 보조금 성격의 세제지원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도입했지만 경기침체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율은 3.1%에서 2.6%로 떨어졌다. 또 2010년 도입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또한 2011년 경기둔화로 취업자수 증가율이 3.5%에서 2.7%로 하락했다.

그는 이어 10년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환차익(최대 300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는 해외주식투자펀드 또한 최근의 국제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 실장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난 8월 중국의 위안화 절하 이후 세계증시 시가총액이 10일동안 12% 감소하는 등 세계주식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등은 형평성 또는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실장은

“ISA의 경우 최대납입수준 월 165만원을 5년간 납입하더라도 세금감면 효과는 발생소득 대비 연간 1.5%에 불과하다”면서 “세후수익률 증가가 크지 않아 가입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1200만원까지 납입가능한 재형저축의 경우에도 연평균 납입금액은 약 24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ISA에 대한 저소득층의 가입 및 계좌유지를 장려할 방안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율이 항목수 기준으로는 31%(총 88개 항목 중 27개)에 달하지만 감면액 기준으로는 12.6%(총 3조8000억원 중 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등으로 예년 대비 세수효과는 부진할 것”이라면서 “향후 5년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892억원으로 지난 2012~2014년 평균 세수효과 2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청년고용증대세제 효과 '미미'

기사승인 [2015-10-30 13:42]

아시아투데이 김은경 기자(세종) =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시적인 보조금 성격의 지원이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용을 꺼리는 기업에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데다 통상 취업률은 경기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정부가 마련한 청년고용증대세제는 고용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일시적인 보조금 성격이라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이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500만원, 대기업은 250만원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실장은 "지난 2004년에도 정부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청년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경기가 침체해 취업자 수는 오히려 하락했다"며 "2010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진했지만 이듬해 경기 둔화로 취업자 수 증가율은 전년(3.5%)보다 0.8%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도 2%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취업을 증가하는 경기상황과 연동되기 때문에 정부가 마련한 세제지원을 통해서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는 "임시방편적인 청년취업지원은 의미가 없다"며 "기업의 인력채용은 장기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라 소액의 세액공제 때문에 결정을 다르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청년취업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어차피 채용하려고 했던 기업에 세금을 줄여줘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설비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제도를 고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고용문제의 핵심 키는 민간 기업이 갖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이라 고용을 늘려나가기 어렵다"며 "설비투자 중심의 현행 세제 지원제도를 고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규모 설비투자 위주의 제조업에서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세제 지원의 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비스 부문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 현재 투자세액공제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고 연구개발비의 비중도 작아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 인력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현재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제도의 활용률이 낮고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고용관련 조세특례 규모가 10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적치는 402억원에 불과해 전망치 대비 활용률이 38.1%에 그쳤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 실제로 제공된 감면규모가 정부 전망치 747억원의 4.8% 수준인 36억원으로 나타났다.

EK00@asiatoday.co.kr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머니투데이

예산정책처 "세법개정안, 실효성 제한...세수효과 부진"

[the300]토론 참석자 "중장기적 세입확충 방안 모색" 한 목소리

이하늘 기자 | 입력: 2015.10.30 13:50

국회 예산정책처가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일부 제한되고 세입확충 역시 미흡할 것으로 우려했다.

박용주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투자펀드 비과세 등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SA(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는 형평성, 혹은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거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으로 예년 대비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을 내놔다. 그는 "세법 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1조892억원(행정자치부 기준)"이라며 "이는 2012~2014년 세법개정안의 평균 세수효과인 2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안정적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저성장으로 인한 세수기반 약화와 복지재정 수요 증대를 감안하면 경제성장률이 높고 복지지출 비중이 낮았던 2000년대 초반 수준의 17~18%의 조세부담률이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에 참여한 성명재 홍익대 교수 역시 "지속가능한 정책의 첫번째 조건은 시장친화적 정책인데 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이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담뱃세 등 보완 및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조정, 세율조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함께 이뤄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정안이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재정건전성 보완을 위한

세수확대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ISA가 국민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 적합토록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11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방향으로 마련됐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과 3년간 세수실적 예산하회를 타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이번개정으로 세수효과는 1조89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03013237694166>

1조원대 세법 전쟁...규모는 소폭, ISA·업무용차 과세 '논란'

전술기 기자 sgjun@chosunbiz.com

입력 : 2015.10.30 14:21 | 수정 : 2015.10.30 15:45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함께 세법(稅法) 개정에도 시동을 걸었다. 예산과 관련된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달 10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예년 대비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세 인상, 가계소득증대세제 3종 세트로 세금 제도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많은 개정이 이뤄졌다면, 올해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선에서 소폭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간 1조892억원이다.

세법을 심의해야 하는 국회 또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票心)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세금 제도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논란으로 한바탕 흥역을 앓은 탓이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청년고용증대세제·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업무용 승용차 과세·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이 예고된다.



▲ 국회 본회의 모습/조선DB

◆ '만능통장' ISA...전문가들 "실효성 없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ISA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가입자가 선택하는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하나의 계좌로 운영하면 정부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ISA는 근로·사업소득자가 5년 간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발생하는 소득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받는다. 200만원 초과분은 9%의 저율 분리 과세가 시행된다.

정부가 ISA를 도입한 이유는 저금리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저축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ISA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가입 자격과 운용 대상이 제한적이라 도입의 취지와 달리 '일부 계층'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ISA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 도입 취지와 달리 서민과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 자산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ISA는 저소득층의 가입을 제고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중 연간 2000만원의 저축을 매년 할 수 있는 소득자는 소득상 위 계층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ISA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며 "고위험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얻어야 세금 감면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운용 대상에 주식·채권·보험 등이 빠져 있는 것도 수익성을 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우철 교수는 "보험, 채권 등이 운영 대상에서 제외돼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이라며 "종합적인 자산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주 실장은 "ISA의 경우 최대납입수준 월 165만원을 5년간 납입하더라도 세금감면 효과는 발생소득 대비 연간 1.5%에 불과하다"면서 "세후수익률 증가가 크지 않아 가입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1200만원까지 납입가능한 재형저축의 경우에도 연평균 납입금액은 약 24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게 ISA의 가입 및 계좌 유지를 장려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국회에서 30일 열린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전슬기 기자

◆ 업무용 승용차 과세 '비용 처리 제한 vs 통상 마찰 우려'

정부가 공평 과세의 일환으로 업무용 승용차 과세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모두 올바른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비용 처리 제한' 방안이 없어 국회 심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인용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쓰고 세금을 탈루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임차,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혜택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50%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50%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등 업무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차량에 회사 로고를 붙이면 차량 구입, 유지비 등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에는 차량 혜택의 상한선이 없어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혜택도 늘어난다는 모순이 생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억5000만원대 고급 차량은 손금 인정기간인 5년간 보는 절세 혜택이 6700만 원을 넘어서는 반면 1600만원짜리 엑센트 차량은 700만원 밖에 안 된다

박용주 실장은 "업무 관련성 및 비용 인정의 요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도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인정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감가상각비와

유류비 등을 포함한 연간 경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서 "구체적인 상한은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업무용 차량구입 및 임차비용을 3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차값과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총액 5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유류비 등을 포함한 총 운영경비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 상한선이 정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반면 비용 처리 상한선을 두고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비차별적인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의 두 가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용 차량에 대해 비용인정 한도를 둘 때 대부분 수입차가 해당돼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990년 정부는 차량가격이 7000만원 이상일 경우 취득세율을 2배로 부과 했는데, 수출국으로부터 불공정 무역 규제로 지목돼 폐지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도입 '부정적영향' 우려

정부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지원을 위해 도입할 예정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신규 투자하는 해외주식펀드의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10년 동안 양도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14%의 비과세를 주는 것이다.

박용주 실장은 "최근의 국제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제도를 도입할 유인이 감소했다"며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는 투자감소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유찬 교수는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과세를 허용하면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장려한다는 것이다"며 "자본에 대한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 프린트 ☒ 닫기

Copyright (c) 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chosun.com for more information.

우려커지는 ISA·청년고용증대세제...조세소위 최대'쟁점'

[the300]예산정책처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서 한목소리 '비판'

배소진 기자 | 입력: 2015.10.30 14:30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15년 8월 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실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 한명진 기재부 조세정책관/사진=뉴스1

정부가 추진 중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소득상위 계층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해외투자활성화를 위한 해외주식투자전영펀드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등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는 ISA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일제히 제기됐다.

박용주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개인의 저축·투자요인을 증가시키고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도입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제도의 취지인 신규저축 확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SA는 가입자가 선택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한 후 이자·배당소득에 세제혜택

을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사업소득자가 5년동안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된다.

하지만 ISA를 가입했을 때 기대되는 세후수익률이 높지 않아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게 박 실장의 지적이다. 새로 가입하기보다는 기존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 고소득자들이 세제혜택을 위해 자산을 이동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재형저축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있지만 연평균 납입금액은 약 240만원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의 저축여력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 역시 "연간 가입한도 2000만원 정도의 저축을 매년 할 수 있는 소득자는 소득 상위계층"이라며 "(이자배당소득) 200만원 초과분에 9% 저율과세를 해주는 것은 현재도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로 14%의 저율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을 더 저해하는 역방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ISA에 대해 "고위험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얻어야 세금감면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의 활용도는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금융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서민과 중산층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로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주 실장은 해외주식투자전문펀드에 대해 최근 국제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제도를 도입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10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2007년~2009년 한차례 도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개인계좌 639만건의 손실금액이 16조원(2009년 7월 기준)에 달했던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자본유출의 우려가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세계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위험도만 높아진다는 우려다. 해당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가 감소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밖에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일시적인 보조금 성격의 세제지원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등 과거 유사 정책사례를 감안해봐도 취업률은 경기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기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응해 중소기업이 청년정규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때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는 윤호중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안 중 대기업에도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대기업은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해야 할 대상인데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재벌감세"라고 비판했다.

김유찬 교수 역시 "청년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차피 채용하려 했던 기업에 세금만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며 "특히 줄여나가야 하는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이름만 바꿔 지속시키는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03014047636085>

홍종학 의원 "박 정권의 세법개정안, 재벌지원·서민 쥐어짜기 위한 것"

한예솔 기자 | 승인/2015.10.30 14:35

[대한뉴스=한예솔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오전에 열린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재벌지원'과 '서민 쥐어짜기'를 중단시키고 조세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소위 전면 공개 ^납세자 영향평가 제출 의무화 ^세법 간소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등 3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토론과 의견개진을 통해, 국회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의 방향과 주요쟁점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렸다.

김동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박용주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홍익대 성명재 교수, 홍익대 김유찬 교수,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토론자로 나선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제 개편은 '재벌지원'을 우선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 쥐어짜기'로 일관하여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서민경제는 피폐해 졌다"며, "이번 세법심사 원칙으로 재벌·슈퍼부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중산층·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조세공평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재벌·슈퍼부자 과세강화' 및 '중산층·서민 세부담 완화'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법심사원칙과 중점 추진법안 34개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통신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자영업자에게도 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MB때 인화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자기주 분할신주 배정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법인세법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법 ▲소득금액 5천억원 초과 대기업은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 공제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신규 채용시 1천만원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리베이트를 폐지하는 관세법 등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날 홍 의원이 지적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청년고용 증대세제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안은 중소기업에만 정규직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작년 조세소위에서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이 올해는 대기업지원을 포함하여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재벌·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소비세 폐지 및 기준가격 상향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내년 2.1조원의 세입을 예상하는 정부가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기준가격을 상향조정(200만원→500만원)하기로 한 것은 전형적인 재벌감세 부자감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해외주식투자 비과세펀드 신설

현재의 세계화 시대에 비과세펀드를 허용하는 것은 좋으나, 이 경우에도 환헷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재벌 금융회사만 배불리게 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정규직 전환 임금증가분 세액공제,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은 대부분 재벌 대기업이 그 혜택을 받으므로 재벌지원책에 불과하다.

ISA(개인종합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

이는 사적저축(연금)강화시키고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이며, 5년간 세수효과가 -1조6,500억원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를 공적연금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기존의 각종 공제 및 비과세상품과 중복되며, 이와 같은 저축을 할 수 있는 계층은 결국 부자들이므로 이는 부자들에게 2중, 3중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세입자를 지원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세제지원을 해주어야 하나, 일반임대 기업형 임대는 결과적으로 건설족과 투기꾼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과 같은 전월세 폭등 대책이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차량가액, 배기량, 업무주행비율 등 엄격한 업무관련성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로고부착,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등 1회성 형식적 기준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사행산업 당첨금 과세기준 강화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외경마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은 사행산업을 억제 하려는 것임에 반해 경마 등 배팅액 100배 또는 200만원을 초과로 과세기준을 강화하려는 정부안은 도박을 줄이기보다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

기타 조세감면제도

올해로 일몰되는 전자세금계산서 VAT 세액공제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종료는 연장되어야 하며,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은 폐지되어야 한다.

한편 홍 의원은 조세소위의 전면공개, 납세자 영향평가 제출 의무화, 세법 간소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조세공평성을 위한 3대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새정치 측 이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주장해왔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고 있지 못한 내용들이다.

한예솔 기자 dkorea333@hanmail.net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만능 ISA? 서민에겐 무능통장”

예산정책처 세법개정안 토론회서 실효성 비판
“저소득층 저축여력 적어… 고소득자에만 유리”

정부가 추진 중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소득 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등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신설한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해외주식투자전문펀드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등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ISA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일제히 제기됐다. 박용주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개인의 저축·투자요인을 늘리고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도입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제도의 취지인 신규저축 확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SA는 가입자가 선택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한 후 이자, 배당소득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근로·사업소득자가 5년간 연간 최대 2000만원 납입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된다.

하지만 ISA에 가입했을 때 기대되는 세후수익률이 높지 않아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게 박 실장의 지적이다. 새로 가입하기보다 기존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투자를 활발히 하는 고소득자들이 세제혜택을 위해 자산을 이동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운용 중인 재형저축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지만 연평균 납입금액은 약 240만원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의 저축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 역시 “연간 가입한도 2000만원 정도의 저축을 매년 할 수 있는 소득자는 소득 상위 계층”이라며 “(이자배당소득) 200만원 초과분에 9% 저율과세를 하는 것은 현재도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로 14%의 저율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을 더 저해하는 역방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ISA에 대해 “고위험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얻어야 세금감면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의 활용도는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금융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서민과 중산층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로 유도하는 게 적절한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주 실장은 해외주식투자전문펀드에 대해 최근 국제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제도를 도입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요

가입자격	근로자, 사업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납입한도	연 2000만원
편입상품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세제혜택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가입기간	의무가입 5년, 저소득·청년은 3년



1명당 3000만원까지 10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해주겠다는 것인데 2007~2009년 1차례 도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개인계좌 639만개좌의 손실금액이 16조원(2009년 7월 기준)에 달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자본유출 우려가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로 세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험도만 높아진다는 우려다. 또 해당 제도 도입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일시적인 보조금 성격의 세제지원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응해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때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는 윤호중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한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안 중 대기업에도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혜택을 주는 데 대해 “대기업은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해야 할 대상인데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재벌 감세’”라고 비판했다. 배소진 기자 sojinb@

홍종학 의원, '세법심사시 재벌·수퍼부자 과세강화 쏙점'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세법개정안 본격 심사를 앞두고 재벌 및 수퍼부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선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산정책처** 주최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제개편은 재벌지원을 우선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 쥐어짜기로 일관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서민경제는 피폐해 졌다"고 밝혔다.



홍종학 의원.

이어 "이번 세법심사 원칙으로 재벌 수퍼부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중산층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해 조세공평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수퍼부자 과세강화' 및 '중산층·서민 세부담 완화'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법심사원칙과 중점 추진법안을 제시했다.

중점 추진법안은 ▷통신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자영업자에게도 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MB때 인화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자기주 분할신주 배정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법인세법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법 등이다.

그는 또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청년고용 증대세제'와 관련, 올해 대기업 지원을 포함해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재벌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해 내년 2조1천억원의 세입을 예상하는 정부가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 역시 전형적인 재벌감세 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와 관련해서는 차량가액, 배기량, 업무주행비율 등 엄격한 업무관련성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로고부착,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등 1회성 형식적 기준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조세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소위 전면 공개 ▷납세자 영향평가 제출 의무화 ▷세법 간소화 및 비과세 강면 축소 등을 제시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5-11-02 11:03:58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igital
세정신문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77(동교동 201-33) 사업자 번호 :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All Rights Reserved.

[기획] ISA계좌 '목돈 장만' 만능통장이라더니... 절세 효과수익률 뚝뚝 수준?

소득공제 혜택 없는 탓... 수익률도 절세상품중 꼴찌

입력 2015-11-03 22:07



*모든 상품의 만기는 5년, 연 3% 수익이 5년 동안 복리로 계산된다고 가정 (자료: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팀장)

내년 3월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정부의 바람대로 '목돈 마련의 동반자'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시장에는 고개를 갇웃거리는 사람이 많아 보인다. ISA로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지 않은 데다 인출과 계좌유지 기간 제한도 크기 때문이다.

ISA는 개인이 자기 판단에 따라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것이다. 연간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의무가입 기간은 5년(저소득·청년층은 3년)이다.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뒤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0만원 초과분에는 저율(9.9%) 분리과세한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온 박용주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ISA는 월 165만원씩 5년간 납입해 연 4% 수익을 낸다고 가정할 때 절세 효과는 발생 소득 대비 연간 1.5%에 불과하다"며 "세후 수익률 증가가 크지 않아 ISA 가입 수준이 높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ISA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 절세 효과가 크지 않고, 고위험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어야 세금 감면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거래소 금융조세포럼에서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절세형 금융상품 7종의 수익률을 비교해봤더니 ISA의 순위가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만기 5년 동안 연 3% 수익이 복리로 실현된다고 가정할 때 노란우산공제의 총 수익률(세후 수익률+소득·세액공제 효과)이 18.38%로 가장 높았고 소득공제장기펀드(14.53%), 적립IRP(11.85%), 연금저축(10.56%)이 뒤를 이었다. ISA의 수익률은 8.64%로 재형저축과 저축성보험(9.37%)에도 못 미쳤다.

다만 그동안 국내 금융상품 과세 방식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손익 통산'을 적용한 것은 ISA의 장점으로 꼽힌다. 손실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손실 보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원 팀장은 "손익 통산을 감안하면 ISA에 고위험 투자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을 섞어서 넣는 것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도인출이 안 되는 것과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면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출해야 하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자본시장연구원 천창민 연구위원은 "3년간 금

용기관에 묶여야 하는 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저소득층은 많지 않다”며 “인출 제한은 저소득층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COPYRIGHT BY KUKMINILBO ALL RIGHTS RESERVED.

ISA계좌 ‘목돈 장만’ 만능통장이라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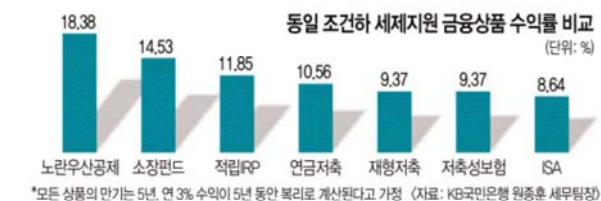
절세 효과·수익률 푼돈 수준?

소득공제 혜택 없는 탓
수익률도 절세상품중 꼴찌
중도 인출안돼 돈 묶여

내년 3월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정부의 바람대로 ‘목돈 마련의 동반자’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시장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많아 보인다. ISA로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지 않은 데다 인출과 계좌유지 기간 제한도 크기 때문이다.

ISA는 개인이 자기 판단에 따라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것이다. 연간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의무가입 기간은 5년(저소득·청년층은 3년)이다.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뒤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저율(9.9%) 분리과세한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온 박용주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ISA는 월 165만원씩 5년간 납입해 연 4% 수익을 낸다고 가정할 때 절세 효과는 발생 소득 대비 연간 1.5%에 불과하다”며 “세후 수익률 증가



가 크지 않아 ISA 가입 수준이 높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ISA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 절세 효과가 크지 않고, 고위험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어야 세금 감면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수익이 높지 않은 계층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거래소 금융조세포럼에서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절세형 금융상품 7종의 수익률을 비교해봤더니 ISA의 순위가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만기 5년 동안 연 3% 수익이 복리로 실현된다고 가정할 때 노란우산공제의 총 수익률(세후 수익률+소득·세액공제 효과)이 18.38%로 가장 높았고 소득공제 장기펀드(14.53%), 적립 IRP(11.85%), 연금저축(10.56%)이 뒤를 이었다. ISA의 수익률은 8.64%로 재형저축과 저축성보험(9.37%)에도 못 미쳤다.

다만 그동안 국내 금융상품과 세 방식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손익 통산’을 적용한 것은 ISA의 장점으로 꼽힌다. 손실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손실 보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원 팀장은 “손익 통산을 감안하면 ISA에 고위험 투자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을 섞어서 넣는 것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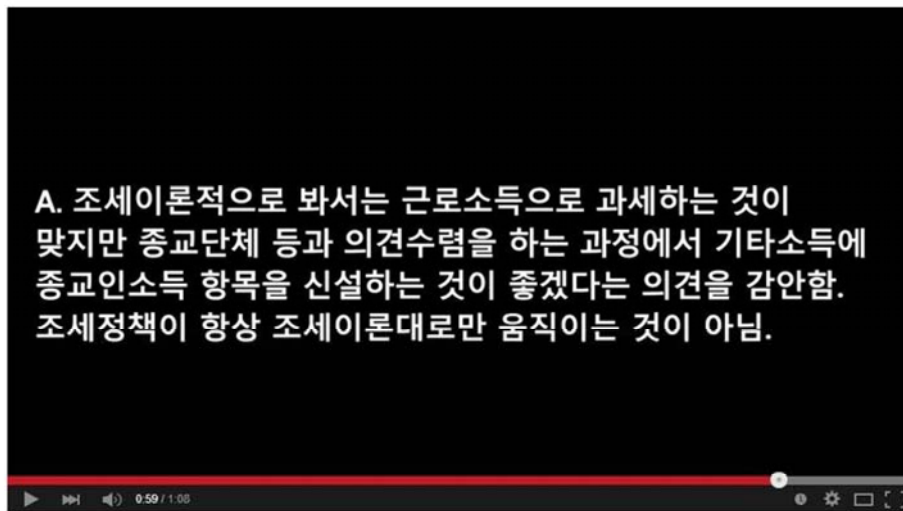
그러나 중도인출이 안 되는 것과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면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출해야 하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자본시장연구원 천창민 연구위원은 “3년간 금융기관에 묶여야 하는 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저소득층은 많지 않다”며 “인출 제한은 저소득층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세제실장, “종교인 소득, 이론상 ‘근로소득’ 맞지만 종교계 요구 수용키로”

대법 판결 무시하고 ‘기타소득’ 강행, 사실상 면세쿠폰…법개정전 징세권 팽개친 국세청도 책임

[드림저널 k@newsdream.net](mailto:k@newsdream.net)



▲ © 드림저널

[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조세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은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이 맞지만,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타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세법에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종교계 눈치를 보며 징세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해온 결과, 세법 개정 없이도 성실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온 일부 종교인들과 납세자들만 피해를 봤다는 점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4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정한 것은 해당 조항이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만을 주로 고려한 결과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0월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종교인 소득은 조세이론적으로 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득세법체계상 일시적인 소득만 기타 소득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정부는 이처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종교인들의 소득을 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 하느냐”고 묻자 문 실장이 대답한 첫 마디였다.

국회 심의 중인 2015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 방법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료가 ‘종교인 소득이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실장은 이어 “다만 종교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감안해 기타소득으로 했다”면서 “조세정책이 항상 조세이론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녹취 음성 파일 듣기 : <https://youtu.be/CNwQglXOBYs>)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미 현행 세법으로도 일부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 해왔고, 국세청도 드물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결(결정)도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굳혀져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런 상식을 뒤집고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바꿔 사실상 과세를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가 성실납세자를 역차별하고, 불성실 납세자를 우대할 결과 나머지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나눠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선진국 제도를 감안하면 시대정신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세제라는 지적도 눈에 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법 개정 없이도 국가는 현행 세법으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했지만, 적극적인 징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이로써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성실한 종교인들과 종교인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메워야 했던 납세자들만 억울한 세금을 물어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라서 명백히 근로소득인 종교인 소득을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특별히 구분한 뒤 원천징수 의무조차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별대우”라면서 “선진국 성직자와 달리 세금을 자발적으로 낼 정도로 한국의 종교인들이 특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가난한 성직자들에게 근로장려세제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면서 “누가 가난한지 정확히 알기 위해 종교시설의 재정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비로소 ‘종교인 과세’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시간 : 2015년 11월03일 [16:57:00]

세제실장,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맞지만...' 발언 논란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서명운동

조세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은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이 맞지만,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타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세법에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종교계 눈치를 보며 징세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해온 결과, 세법 개정 없이도 성실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온 일부 종교인들과 납세자들만 피해를 봤다는 점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4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정한 것은 해당 조항이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만을 주로 고려한 결과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0월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종교인 소득은 조세이론적으로 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득세법체계상 일시적인 소득만 기타소득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정부는 이처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종교인들의 소득을 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 하느냐”고 묻자 문실장이 대답한 첫 마디였다.

국회 심의 중인 2015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 방법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료가 ‘종교인 소득이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실장은 이어 “다만 종교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감안해 기타소득으로 했다”면서 “조세정책이 항상 조세이론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미 현행 세법으로도 일부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 해왔고, 국세청도 드물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결(결정)도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굳혀져있었다.

연맹은 현 정부는 이런 상식을 뒤집고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바꿔 사실상 과세를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가 성실납세자를 역차별하고, 불성실 납세자를 우대해온 결과 나머지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나눠줬다는 비판도 나왔다.

선진국 제도를 감안하면 시대정신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세제라는 지적도 눈에 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법 개정 없이도 국가는 현행 세법으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했지만, 적극적인 징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이로써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성실한 종교인들과 종교인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메워야 했던 납세자들만 억울한 세금을 물어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라서 명백히 근로소득인 종교인 소득을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특별히 구분한 뒤 원천징수 의무조차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별대우”라면서 “선진국 성직자와 달리 세금을 자발적으로 낼 정도로 한국의 종교인들이 특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가난한 성직자들에게 근로장려세제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면서 “누가 가난한지 정확히 알기 위해 종교시설의 재정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비로소 ‘종교인 과세’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입력 : 2015-11-04 10:49:11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igital
세정신문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77(동교동 201-33) 사업자 번호 :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재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All Rights Reserved.

납세자연맹, “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징세권 행사하지 않아”

기재부 세제실장, “종교인 소득은 이론상 근로소득...종교계 요구 수용해 기타소득 포함”

2015년 11월 04일

이성태 기자 ☞ stlee@iheadlinenews.co.kr

조세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은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이 맞지만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타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정한 것은 해당 조항이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만을 주로 고려한 결과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0월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종교인 소득은 조세이론적으로 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득세법체계상 일시적인 소득만 기타 소득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정부는 이처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종교인들의 소득을 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 하느냐”고 묻자 문 실장이 대답한 첫 마디였다.

국회 심의 중인 2015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 방법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료가 종교인 소득이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실장은 이어 “다만 종교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감안해 기타소득으로 했다”면서 “조세정책이 항상 조세이론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미 현행 세법으로도 일부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해 왔다.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통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결(결정) 역시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봤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 같은 상식을 뒤집고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바꿔 사실상 과세를 더 어렵게 한다고 납세자연맹은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법 개정 없이도 국가는 현행 세법으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했지만 적극적인 징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성실한 종교인들과 종교인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메워야 했던 납세자들만 억울한 세금을 물어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라서 명백히 근로소득인 종교인 소득을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특별히 구분한 뒤 원천징수 의무조차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별대우”라면서 “가난한 성직자들에게 근로장려세제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헤드라인뉴스(<http://www.iheadlin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세제실장, “종교인 소득, 이론상 ‘근로소득’ 맞지만 종교계 요구 수용키로”

대법 판결 무시하고 ‘기타소득’ 강행, 사실상 면세쿠폰…법개정전 징세권 뺏겨온 국세청도 책임

2015년 11월 04일 (수) 15:24:37

김정환 kjhwan00@hanmail.net

조세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은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이 맞지만,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타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세법에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종교계 눈치를 보며 징세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해온 결과, 세법 개정 없이도 성실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온 일부 종교인들과 납세자들만 피해를 봤다는 점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4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정한 것은 해당 조항이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만을 주로 고려한 결과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0월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종교인 소득은 조세이론적으로 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득세법체계상 일시적인 소득만 기타소득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정부는 이처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종교인들의 소득을 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 하느냐”고 묻자 문실장이 대답한 첫 마디였다.

국회 심의 중인 2015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 방법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료가 ‘종교인 소득이 이론적으로 근로소득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실장은 이어 “다만 종교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기타소득에 종교인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감안해 기타소득으로 했다”면서 “조세정책이 항상 조세이론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미 현행 세법으로도 일부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세로 신고납부 해왔고, 국세

청도 드물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결(결정)도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굳혀져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런 상식을 뒤집고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바꿔 사실상 과세를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가 성실납세자를 역차별하고, 불성실 납세자를 우대할 결과 나머지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나눠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선진국 제도를 감안하면 시대정신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세제라는 지적도 눈에 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법 개정 없이도 국가는 현행 세법으로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했지만, 적극적인 징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이로써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성실한 종교인들과 종교인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메워야 했던 납세자들만 억울한 세금을 물어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라서 명백히 근로소득인 종교인 소득을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특별히 구분한 뒤 원천징수 의무조차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별대우”라면서 “선진국 성직자와 달리 세금을 자발적으로 낼 정도로 한국의 종교인들이 특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가난한 성직자들에게 근로장려세제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면서 “누가 가난한지 정확히 알기 위해 종교시설의 재정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비로소 ‘종교인 과세’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간일	2015년 12월
발행인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제 작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tel 02·2269·9917)

1.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8·3778)
-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